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19



2015년 성공적인 ECCK White Paper (백서) 첫 출간에 이어, 올해 역시 2019년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산업 및 규제 이슈들을 정리한 백서를 다섯 번째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CCK는 국내 유럽기업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더 나은 한국의 기업환경조성에 일조하고자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이슈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해,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원사들에게는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환경은 물론 산업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전망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유럽은 여전히 돈독하고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적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국가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최대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유럽관계의 괄목한만한 발전을 고려할 때, 한국시장의 동향, 규제환경,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ECCK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의 최일선에서 회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CCK는 산업별 규제와 정책이슈를 다루는 더욱 발전된 백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과 비판은 저희에게 큰 도움과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간되는 백서를 통해 활발한 정보의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백서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회원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Dimitris Psillakis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19

인사말	p 2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p 5
2019 백서 개요	
2019 요약	p 13
2018 리뷰	p 17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자동차	p 35
주류	p 42
화학	p 44
화장품	p 61
패션 및 유통	p 67
식품	p 71
헬스케어	p 75
보험	p 93
지식재산권	p 97
주방 및 소형가전	p 107
물류 및 운송	p 109
조선 및 해양	p 113
ECCK 워킹그룹 (ECCK Working Group)	
항공 및 방위산업	p 116
에너지 환경	p 119
금융서비스	p 124
인적자원(HR)	p 127
조세	p 131
관광산업	p 137
부록	p 138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로서,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지식경제부)의 정식인가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연합대표부를 비롯하여 유럽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설립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기업들과 한국정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또한 유럽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념 및 활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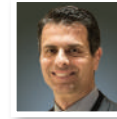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로서,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지식경제부)의 정식인가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연합대표부를 비롯하여 유럽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설립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기업들과 한국정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또한 유럽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그리스)

회장

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Dimitris Psillakis) 회장은 그리스 국적으로 2015년 9월 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및 사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실라키스 회장은 1992년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스를 시작으로 세일즈 및 마케팅 전문가로 다임러 그룹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로 오기 전 까지, 라틴 아메리카 승용 부문 대표이사로 활동 하였습니다.



디어크 루카트 (독일)

부회장

현 쉐커코리아 대표

대표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부회장은 독일 출신으로 2015년부터 쉐커 코리아의 대표이사사 CEO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Schenker & Co. GmbH in Frankfurt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인디아의 DB 쉐커에서 다수의 관리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디어크 이사는 일본에 위치한 세이노쉐커에서 General Manager를 맡았으며, European Business Council의 물류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계약 물류, 항공 & 해상 물류, 전사업업과 프로젝트를 포함한 물류 산업에 20년이 넘는 방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현남 (한국)

부회장

현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 대표

및 공동 지점장

박현남 (Hyun-Nam Park) 부회장은 한국 출신으로 현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 대표 및 공동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마켓팅의 헤드이기도 하며, 이 외에도 금융 업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재한 외국인 은행가 그룹의 부회장이며, 금융위원회 내 한국 금융 허브 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얀 뵁가드 (덴마크)
부회장
현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

얀 뵁가드 (Jan Benggaard) 부회장은 덴마크 출신으로 2016년 11월부터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2002년부터 부산에 위치한 바르질라마린시스템즈 코리아(Wärtsilä Marine Systems: 구 L-3 마린시스템즈)에서 사장으로 지냈던 얀 부회장은, 1998년 부산으로 오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의 사업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엔지니어와 세일즈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얀 부회장은 2005년부터 부산국제외국인학교의 감사를, 2015년부터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아왔습니다.



김동환 (한국)
이사
현 핀에어
한국지사장

김동환 (Donghwan Kim) 이사는 한국 출신으로 2012년 부터 핀에어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2008년 부터 핀에어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시작했으며, 2011년 부터 핀에어 본사에서 근무하며 한국 지사 세일즈 매니저와 본사 글로벌 상용 세일즈 매니저 등의 맡은 바 있습니다.



질 프로마조 (프랑스)
이사
현 AXA손해보험
대표이사

질 프로마조 (Gilles Fromageot) 이사는 프랑스 출신으로 2017년 4월부터 AXA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 지사 대표이사직 이전에 그는 AXA Global Direct사에서 글로벌 CFO와 AXA손해보험 한국지사 CFO 및 corporate secretary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AXA사 입사 전, 파리와 마드리드에 있는 Mazars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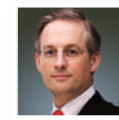
줄리엔 샘슨 (프랑스)
이사
현 GSK 한국법인
사장

줄리엔 샘슨 (Julien Samson) 이사는 프랑스 출신으로 2018년 3월 부터 GSK 한국법인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2015년 부터 3년간 GSK 프랑스 법인의 일차치료제 사업부 총괄, 2012년 부터 3년간 GSK 글로벌 호흡기질환 사업본부의 렐바, 세레타이드, 아뉴이티 및 3제 복합제 신제품 영업마케팅 전략 총괄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는 GSK에서 일하기 전 프랑스 리옹 메디컬센터 부국장, 프랑스 대통령 내각 사회복지정책 자문역, 프랑스 경제부 장관, 예산부 장관 사회복지정책 자문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남경희 엘리자베스 (한국)
감사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

남경희 엘리자베스 (Elizabeth Kyunghee Nam) 감사는 한국 출신으로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무 및 전반적 관리 업무 쪽에서 18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아지오에 오기 전, LG텔레콤, Shepherd, Schwartz & Harris, 및 필리핀항공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카이야네스 베그너 (독일)
이사
현 김앤장
외국변호사

카이야네스 베그너 (Kay-Jannes Wegner) 이사는 독일 시민권자이며 독일 및 영국 변호사입니다. 그는 2011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유럽국 고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카이야네스 이사는 2001년부터 2007까지 런던에서, 2007년부터 2011까지 싱가포르의 다국적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무국

크리스토프 하يدر

총장

크리스토프 하يدر (Christoph Heider) 총장은 2013년 6월 1일부로 현직에 취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엘 (Bayer AG)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본지사에서 회계부서장을 한국지사에서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보선

부총장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김태양

대리, 화학 위원회

박안숙

이사, 화장품/헬스케어 위원회

김시윤

대리, 금융산업 위원회

서효경

이사, 식품/주류/주방및소형가전 위원회

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 법률&국제협력 위원회

심혜원

대리,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이현성

과장, 경영지원부

조혜은

대리, 멤버십 관리

김정현

과장, 홍보&커뮤니케이션

조소현

대리, 홍보&커뮤니케이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업소개

위원회 및 포럼

산업별 위원회와 포럼은 상공회의소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는 현재 해당산업의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무역/사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관련된 특정산업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 포럼에서는 인사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포괄적인 주제들을 논의합니다.

행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비즈니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산업 및 경제계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정보교류의 중심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회원사들에게 시장동향과 규제이슈, 주요 사회적 트렌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또는 특정한 산업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CCK 백서
- ECCK 회원명부
- Business Confidence Survey (기업환경조사)
- ECCK Connect 계간지
- 뉴스레터
- ECCK 연간 보고서
- ECCK 분기별 보고서

EU 프로그램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왔으며, 일부 홍보 및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14년에는 한국에 진출하려는 EU국가 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EU Gatew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장조사보고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저희 상공회의소는 EBO World-wide Network ASBL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 백서 개요

2019 요약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백서는 2015년 처음 출간된 이래로, ECCK와 국내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백서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전반적 규제환경을 조망하는 동시에, 국내 유럽 기업들이 선별한 산업별 특정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전망을 한국정부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유럽자유무역연합사무국 (Secretariat of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s),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s) 및 EU와 EFTA 정부 그리고 이외 이해 집단에 게도 국내 경영환경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019년 ECCK백서는 360개의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가 지명한 각 산업위원회 및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166명의 전문가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해당 의견사항은 ECCK 사무국과 협력하여 편집을 진행했다. 20개의 (2018년; 16개) ECCK 산업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통해 제기된 180개의 (2018년; 123개)의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도 백서에는 항공 및 방위 산업, 금융서비스, 관광산업 및 인적 자원(HR) 등 새로 신설된 워킹그룹의 건의사항을 포함했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한국경제와 사회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유럽 비즈니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ECCK는 작년 백서를 통해 제기한 모든 이슈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한국정부로부터 완전한 피드백을 받았다. 작년에 제기된 총 123개의 건의사항 중 약 40%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17개 수용, 9개 부분수용, 23개 기조치).

ECCK는 당국의 비즈니스 환경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한국정부와 유럽 비즈니스 간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더욱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요망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유입과 효율적 이용

한국 유입 외국인직접투자(FDI)중 EU는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FDI는 5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7년은 29억 달러에 달했다. 2019년 상반기 한국에 유입된 총 FDI는 58억으로 2018년 동기에 기록된 102억 달러와 비교하여 44억 달러, 약 43%가 감소하였다. 동기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FDI는 31억 달러로 2018년에 비해 3억달러, 약 8%로 감소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2019년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라는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창업”, “전기 공급”, “계약분쟁해결” 평가 지수 요소에 높은 순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OECD가 주관한 FDI제한 지수에서 69 개 국가 중 54 위를 기록했다 (2017년; 67개 국가 중 51위). FDI의 한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럽기업과 물품들이 한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개방된 비즈니스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FDI 흐름을 장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날의 경쟁은 단순히 기업들만의 것이 아닌, FDI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기도 하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결정은 장기적으로 검토되며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주요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해외투자는 기업 입장에 있어 가장 유리한 국가에 이루어진다. 더욱 많은 FDI를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확장을 가능케하는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

- 일관성
- 예측 가능성
- 신뢰성
- 투명성

국내외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경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CCK는 한국 정부와 유럽기업간의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한-EU FTA 및 한-EFTA FTA의 현대화

2019년 8 월, 한국은 전세계 FTA 회담 20 주년을 맞았다. 1999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국은 총 15개의 FTA를 맺었다. 한-EFTA FTA는 2005년 12월에 체결됐고 2006년 9 월에 발효되었으며, 한-EU FTA는 2009년 10월에 체결 그리고 2011년 7월 잠정발효 되었다. 양 FTA는 무역 개발 측면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이루었다.

긍정적인 무역 개발은 FDI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8년 유럽에 본사를 둔 66개의 기업들은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41개의 유럽 기업이 한국에 새로 등록되었다.

ECCK는 FTA에 대한 현대화를 권장하고있지만 아직 어떠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과 EFTA 그리고 EU 간의 무역 관계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제 블록과 한국 간의 무역을 관장하는 계약을 현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ECCK의 강력한 신념이다. FTA

에 대한 철저한 검토, 낡은 절차 제거 및 최신 절차 추가, 신시장의 혁신적인 기술 포함 등이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해 ECCK는 아래와 같은 한-EU FTA내 요건들의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대상 물품에 트럭 트랙터 포함
- 항공기 수리 및 한국시장 재진출의 의무로부터 면제
- 간접 선적이 적용되는 물품관련 한-EU FTA의 혜택 적용

해당 이슈를 제기한지 약 7년이 되었으며, ECCK와 소속 회원사들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무역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또는 동등성 계약의 증대에 관한 조항을 더 포함시킴으로써 FTA의 현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는 국제 표준과 벗어나는 규칙 및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국같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있어 해당 이슈는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면 규제 번역의 모호성을 줄이고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

공정 경쟁 강화

ECCK 백서는 산업별 특정과제 및 관련 건의사항만 다루고 있으며, 각 회원사의 개별 이슈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ECCK는 부적절한 재무 및 기타 거래가 일부 유럽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옹무부즈만에게 전달되었다.

공정한 경쟁은 다양한 방향에서 보여지고 평가될 수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된다. 한국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당국이 주도하는 시책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현실이다.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국내 제약회사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제약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급 가격 정책
- 현지화 정책에 따라 조선소가 외국 공급 업체를 한국 공급 업체로 교체하려는 움직임
- 정부 기관의 특정 유럽기업에 대한 감사 또는 기타 조사와 같은 재정적 처벌로 인한 불균형 초래

결론

한국은 유럽의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유럽 기업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시장이다. 유럽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더욱 확장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미래의 고용 창출에 대하여 끊임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환경 발전을 위하여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규칙과 규정에서 국제표준의 완전한 채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FDI의 유입을 촉진하고 동시에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진출 역시 촉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정부와 유럽기업간의 의사 소통은 많은 발전을 보였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유럽기업들의 규모와 경제 및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 결정 단계에서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며 더욱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ECCK를 통하여 국내 유럽기업들과 정부간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산업측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규칙 및 규제에 대한 의견, 지식 공유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서에 제시된 이슈들은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되고 이루어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발전이 필요하다. ECCK는 본 백서가 한국 정부와 향후 논의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유럽 산업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두의 과제이다.

2018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4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이슈 및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23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각 규제이슈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과 ECCK의 조치계획은 아래 산업별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위원회

2018년도 백서에서는 총 18개의 자동차 산업분야 이슈 사항에 대해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총 5건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로부터 기초치 혹은 부분수용 등으로 업계 의견을 검토하는 답변을 받았다. 일부 정부부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다시 반영하여 2019년도 백서에 재건의 및 수정된 건의를 진행하였다.

2018 주요이슈목록1. 충돌안전기준 개정안 시행 시점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EV/PHEV용 구동축전지에 대한 시험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한-EU FTA에 따른 UNECE 형식 승인서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배출가스, 연비, 소음측정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 시험기관 범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환경성보장제도 운영에서의 국제 표준 절차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2018 리뷰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8.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구체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9.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성적서 기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0. 고객 인도 전 차량의 제작 결함 시정 및 고지 의무**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1. 제작결함 시정 계획에 대한 보고 절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2.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3. 자동차 너비 기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4.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 차종**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5. 자동차자기인증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인정 범위**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6. 대형차 온실가스 산정 프로그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7. E-Mark 부착 타이어에 대한 안전확인신고 면제 절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18. 해외 원산지 타이어에 대한 E-Mark 인정**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주류위원회**

주류 경품가액과 총액한도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서 어느정도 상향 조정되었다. 주류의 온라인 마케팅 허용의 건의 원론적인 주류의 폐해 측면보다는 전반적인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병맥주에만 남아있는 할인매장용과 가정용의 용도구분 표시제 개선을 재차 건의하는 바이다.

2018 주요이슈목록1. 주류 경품가액과 총액한도**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2. 주류 경품제공 내용 디지털 마케팅 허용**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3.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가 부착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완전 폐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4. 병맥주의 용도구분 표시제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

화학위원회

본 위원회는 화평법, 제품안전법 및 화관법에 대하여 8개 안건과 제안사항을 환경부에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이 중 5개 사항이 기조치 또는 수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안건 수용율은 62.5%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 화학 법률간 중복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규제 이행에 있어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과 비밀관성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CCK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연구 개발에 대한 위축과 영업비밀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제안사항을 건의할 것이다.

2018 주요이슈목록

1.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의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화학물질 등록면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5.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조치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6.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자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조치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기준: 타 국가 법에 의한 유사성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8.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문제점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화장품위원회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고 해외 규제와 조화를 맞추어 화장품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연령 범위도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건의사항 수용사항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경우 여전히 외국에서 인증하는 천연/유기농 기준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를 포함한 통합공고 개정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의 표시 규정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화장품의 포장에 대한 기준은 폐기물 감량정책에 따라 현재는 종료이나 화장품 산업 특성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2018 주요이슈목록

1. 화장품류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

2.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자외선 차단제 SPF 표시 범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어린이 사용 화장품 표시사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6.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의 지정**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7.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패션 및 유통 위원회**

ECCK는 라벨 표시 등 행정적 오류의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되지 않고 개별 상품의 판매가격 표시가 어려울 경우 예외의 방법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현재 통관 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사항 작업이 보세창고에서도 허용됨에 따라 라벨 표시작업장 신고제도 건의사항 안건은 종료되었다.

2018년 백서의 건의사항 중 상존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올해 백서에 제시하였다.

2018 주요이슈목록1. 통관 후 판매 전 안전 기준 준수**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2. 직접운송 요건 관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재건의3. 가격표시제 규칙 관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재건의4. 판매 금지 조항**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5. 안전/품질표시제 산성도 규제 관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6. 표시사항 및 방법**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7. 규제 변동사항 관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재건의**식품위원회**

식품위원회에서 2018년 백서에서 건의한 내용 중 수용 및 장기검토 사항은 추후 모니터 할 예정이다. 천연향료의 규격 개선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개정고시가 나왔으나 그 영향이 미미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다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식품수입통관 절차는 여전히 까다로운 시장진입장벽으로 남아있다.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는 기초치 되었다고 하나, 이번 환경부 포장재재활용표시 개정 때 각부처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표시관련 담당부처가 다를 경우 라벨변경 적용시점이 달라 산업계의 고충이 크다.

2018 주요이슈목록1. Non-GMO 표시 기능 제품 확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2. 유기농식품 한-EU 동등성 협정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3.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천연향료의 정의 및 규격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4. 국제 식품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천연'표시기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5. 식품 수입검사 절차의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재건의**헬스케어 위원회**

염변경 의약품의 특허존속 기간연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는 특허 존속 기간 연장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임상연구 지원기관 소속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고용과 관련된 노동법의 해석이 확인되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표준코드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은 사업자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혁신신약 약가 우대에 대한 차별적 규칙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조건은 국내 및 다국적 기업 모두에게 비현실적이다. 이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외에 제기된 다른 권고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8 주요이슈목록1. 경제성평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2.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확대 적용**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3. 위험분담제도**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4. 환급제 부가가치세 과부담(이중부담) 이슈**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5. 선등재, 후평가 제도의 도입**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6. 사용량-약가연동제**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7. 약제 선별급여**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8. 혁신신약 약가우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9.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0. 염변경 의약품의 특허존속 기간 연장**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11. 투명성 강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2. 혼합백신 접종비 산정방식**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3. 백신제품의 중복시험**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4. 제조업 허가(위탁제조)**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5. 조건부 승인**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6.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 검토 과정 중 추가 자료 요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7.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전자기기/물품 등의 수입 절차 기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8.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관련 규정의 충돌 문제 해결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19. 동물유래 시험 시약 통관을 위한 검역절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0. 임상용 의약품의 관세면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1. 의료기기 가치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2. 가격인하에 수입가격의 적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3.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표준코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

24. 공급내역 보고의 실거래가 정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25.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완화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

보험 위원회

2018년도 ECCK 백서에서는 총 9개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통해 건의함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e-클린보험 시스템 마련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보험사 정보 확인 가능 등의 부분적인 개선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ECCK 보험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보험을 구속행위 대상 상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에서 보험업 개정안 입법이 발의됨에 따라 요청 방향을 수정하여 2019년 백서를 통하여 재 건의할 예정이다.

2018 주요이슈목록

1. 한방병원 치료 및 수가 기준 제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

2. 한국 보험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

3. 신용생명보험을 구속행위 대상 상품 목록에서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교차판매 제도적 허용 및 정보공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법인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험회사 면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에 동일한 구속행위 기준 적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

7. 특수형태근로자 관련 법률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8.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법률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지식재산권 위원회

ECCK는 2018년 백서에 제시되었던 건의사항들이 고려되고 있거나 이미 수용되었거나 추후 이행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몇 가지 사항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올해의 백서에도 포함되었다.

2018 주요이슈목록

1. 지식재산 연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2.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관심 부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국경조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세관 신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6.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원자재 압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7. 자유무역지역(FTZ) 환적화물 감시 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8.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온라인 매개자들의 자정 노력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0.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1.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2. 법정 손해배상 제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최대용량과 관계없이 ‘가정용’은 형식승인 면제를 요청하였고, 2020년 안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하여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상반기가 지난 지금 별도의 추진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전자제품의 적합성 평가의 경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의 인증 단계가 낮춰졌다. 기구용기계제품 식품검사 간소화는 타당한 이유로 미수용 되어 안건 종료한다.

2018 주요이슈목록

1.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2. 전자제품의 적합성 평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3. 환경성보장제도의 합리적 적용**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4. 기구용기제품 식품검사 간소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중단)**물류 및 운송****2018 주요이슈목록**1. 한국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불공정 시장 초래 우려**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2.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전략(Initial Strategy) 채택에 따른 정부의 주도적 대응체계 구성**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3.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적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정책 개선 건의**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4. 목록통관기준의 금액기준 단일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조선 및 해양 위원회**

2018년 백서의 이의 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외국 업체들과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 간 원활한 기술협력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하청업체들의 입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8 주요이슈목록1. 국내 조선소의 불공정한 구매계약 조건**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2.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 정책**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3.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ECCK 조치계획:** 재건의4. 주 52시간 근무제**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그린워킹그룹은 지난 해 백서를 통해 한국이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3가지 이슈를 제안하였고, 이 중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의 피드백을 회신했다. 기초치된 2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산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독려하는 에너지/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두 규제간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

2018 주요이슈목록1. 녹색에너지 전환**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신재생에너지 비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지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공유가치창출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조세 워킹 그룹

2018년 ECCK 백서에서는 총 11개의 안건 중 7개의 안건이 수용되거나 개선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다양한 업계의 조세 전문가로 이루어진 ECCK 조세 워킹 그룹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제기한 미수용 안건 중 논의가 기대되는 안건들은 2019년 백서를 통하여 재 건 의할 예정이다.

2018 주요이슈목록

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와 유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국세청 상호합의 담당 조직 확대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시 조세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세무조사 배제 법제화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고정사업장 범위 일치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외국법인이 100% 소유한 국내 자회사간 합병도 적격합병으로 간주하여 과세이연 혜택 부여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6.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이자율 간주 규정 삭제 or 대여시와 차입시에 동일 이자율 적용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7. 국가별보고서도 국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자회사만 제출하도록 완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8.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액도 손금 인정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진행중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적용 폐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10.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규정 방식 전환 필요

* 열거주의 (positive) → 포괄주의 (negative)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11.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 상호주의 적용 국가를 정부에서 직접 열거할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자동차 위원회

개요

2018년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자동차의 점유율은 약 16.7%로, 판매율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유럽 자동차제작사의 점유율은 약 74%를 기록하였다. 2018년도 상용차 시장에서 유럽 자동차제작사의 점유율은 트랙터의 경우 77.5%, 덤프 트럭은 75%였으며, 대형 카고는 33.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타이어 시장에서도 수입자동차 시장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 타이어 판매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규제 분야에 있어서는 신차 구매 후 고장이 반복될 경우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자동차제작사가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준비되고 있다. 타이어 분야에서는 일정 소음 허용 기준에 맞는 타이어만 판매하도록 하는 타이어 소음 표시제가 2020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타이어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분야에서는 유럽에서의 기준 변화에 맞추어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상향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으며,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도입도 준비될 예정에 있다.

주요이슈

1. 자동차교환환불제도에서의 교환환불 요건 및 대상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1회이상 수리 후 누적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부품이 해외로부터 조달되어 부품 배송 대기 기간으로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차량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배송 대기기간이 규정된 수리일을 초과하여 소비자로부터 교환/환불을 요청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제작사가 해당 규제 준수를 위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고,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사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와 리스차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

수입자동차 제작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환/환불 요구의 요건인 누적수리기간 30일의 연장, 혹은 전체 수리일 계산에서 부품 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교환환불 대상에서 중고차 및 리스차의 제외가 요망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2. EV/PHEV용 구동축전지에 대한 시험 기준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의 [별표1]의 48에서는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항목으로 액중투입안전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액중투입안전시험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으로 국제 기준(GTR-20, Phase1)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자동차 운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고려하여, 액중투입안전시험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항목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의사항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구동축전지의 안전성시험 항목에서 액중투입안전시험을 제외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48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3. 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는 식별표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기준은 국제기준인 UNECE R-121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UNECE R-121에서의 각주에 있는 예외 규정은 조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자동차 제작사는 계기판을 한국 사양과 유럽 사양을 이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건의사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의 식별표시에 대한 기준을 각주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별부호, 조명기준, 식별색상 등을 국제기준인 UNECE R-121과 동일하게 조화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4. 변경보고제도의 법률에서의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제도는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해 변경인증 위반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의 사례에서는 변경승인/허가와 변경보고/신고를 명확히 나누어 규정하고 전자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칙을, 후자의

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의 제재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 변경인증 미이행은 벌칙, 변경보고 미이행은 과태료 등 형사처벌 외의 제재로 달리 규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2항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5. 고연비 차량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명확화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고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의 고연비 차량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 방법에 대해 고연비 차량의 포함 전과 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향상분만큼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고연비 차량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고연비 차량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고연비 차량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정확한 실적 산정 및 중/장기 예상 실적의 관리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청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6. EU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인정

현행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만큼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EU에서도 유사하게 온실가스배출 저감 기술에 대해 실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관계로, EU에서 인정받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사항과 그 인정분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자동차제작사에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보다 적극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EU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과 인정 분야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의사항

EU에서 인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과 인정 실적에 대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는 것이 요망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7. 정기검사제도의 유연성 제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차종 단위로 매 연도의 생산대수(수입자동차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제작자는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등을 통해 제작 중 또는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제작자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UNECE의 COP(Conformity of Production) 제도를 통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의사항

유사 혹은 중복되는 제도가 다수 운영되는 만큼, 정기검사 제도를 유럽의 COP 등 다른 국가에서 승인 받은 유사한 제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확인검사 시험을 진행하는 등 정기검사에 대하여 유연성 제고가 요망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8.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한-EU FTA 협상 시,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다-1에 있는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표기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이 FT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좌석안전띠 부착 기준의 경우, 한-EU FTA 협정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S Code 표기 오류로 인해 FTA 동등성 규정에 의한 한국 안전 기준 충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건의사항

한-EU FTA 협정문의 해당조항의 수정을 통하여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가 한-EU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한-EU FTA 부속서 2-다-1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9. 자동차 너비 기준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자동차의 너비가 2.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폭 규제치의 경우, 유럽과 국내 기준이 유사하나 유럽의 자동차 너비 규제치는 2.55m로 국내 규정보다 넓은 것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2.55m 차량 너비 허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차종에 대한 2.55m 너비 허용이 어려운 경우,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3축 승합자동차에 한정하여 2.55m 너비 기준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건의사항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3축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2.55m의 자동차 너비 기준 허용을 요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10. 중대형차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

현재 국내에서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산출을 위한 국내 자체 프로그램(프로그램명: HES)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도 유사하게 상용차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프로그램명: VECTO)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럽계 상용자동차제작자는 HES와 VECTO의 프로그램상의 차이로 인해 동일 차량임에도 서로 다른 온실가스배출량이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국으로의 수입장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EU FTA의 목적 중 하나인 상호 완전한 시장 접근 보장을 위해, 국내의 새로운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HES)이 유럽산 상용차의 한국으로의 수입 장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준비를 요망한다.

건의사항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HES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럽의 VECTO 프로그램과 동일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결과의 차이 문제가 없도록 하여, 새로운 HES 프로그램이 유럽산 상용차의 한국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되는 것이 요망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1. 한-EU의 소음 기준 조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이 EU의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조화가 요망된다. 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가속 주행소음 허용기준의 경우,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80dB로 규정하고 있으나, EU 기준 (UNECE R-51, 03 series, Phase1)에서는 82dB로 규정되어 있다.

건의사항

UNECE 규정이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규정임을 고려하여, UNECE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소음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요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2. 타이어 안전인증의 표시 시점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8조에서는 타이어 안전인증에 대한 표시를 제품의 통관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제작자의 경우, 통관 물량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 제작된 타이어의 경우 안전인증 표시를 제품 출고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의사항

수입 타이어 제작사의 경우, 타이어 안전인증 표시의 시점을 인증신고가 완료된 타이어의 경우 국내 타이어 제작사와 동일하게 출고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는 것이 요망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8조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13.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현재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유럽계를 비롯한 수입자동차 제작자의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진출 및 확장이 불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자동차 제작자의 고객만족과 신차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며, 이를 위해 수입자동차의 해외 본사로부터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 제한은 한-EU FTA에서 명시하는 양허 사항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수입자동차의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분야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의 매입과 상당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사업분야라는 면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분야와 연관이 적은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건의사항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요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개요

지난 몇년간 한국에서 증가세와 종량세 체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개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합리적인 주세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의 고민이 있어왔다. 그 중 맥주와 탁주에 먼저 종량세 도입이 결정되어 내년부터 과세체계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으로 주류를 거래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주요 주류¹ 수입량은 448백만리터로 2017년에 비해 18.1%가 증가하였다. 금액 증가율은 21.4%로 최근 몇 년 중 금액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류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맥주 수입량은 387백만리터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20% 이상, 2017년에는 5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유럽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 맥주 수입량의 33% (128백만리터)에 해당하며, 미국 맥주의 성장세 (전년대비 98.6% 증가)가 눈에 띈다. 와인 수입량은 35백만리터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하였다.

주요이슈

1. 주류 경품제공 내용 디지털 마케팅 허용

‘주세법’에서 주류 경품을 허용하며 이에 따른 가액과 총액한도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내 별표1 광고의 기준, 7번)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경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판촉 행위는 일정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내용을 홍보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의 모순이며 기업의 자율활동을 과하게 규제하는 제도로 사료된다.

건의사항

타법에서 허용하는 주류의 판촉행위를 홍보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매 없이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류의 경품제공 내용을 홍보 및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을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2. 병맥주의 용도구분 표시제 개선

2017년 용도구분 표시제가 개선되어 와인과 캔맥주의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의 구분 표기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병맥주는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어 재고관리 및 운영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병맥주의 용도구분 중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주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 국세청

3. 주류의 통신/온라인 판매 허용

현재 주세법과 부속법령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온라인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전통주의 경우에는 통신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모두 허용되어 있다. 특히, 과거에는 공공기관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서만 판매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전통주의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전통주”의 개념이 불확실함에 따라, 통신/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주류에 대한 시장 종사자의 이해가 서로 다르며, 이는 국내 생산 주류에 대비한 수입 주류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주류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디지털 상거래의 발전 및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로 보인다.

건의사항

“전통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에 대하여 통신 판매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은 건의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구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 음용자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주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 국세청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화학산업은 국제 경제에서 대체불가한 산업으로서 2017년 세계 총생산의 7.1%를 차지하였고, 전세계 매출 1위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화학산업 발전으로 인해 국제 화학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의 규모는 세계에서 5번째로 성장한 반면 화학물질 관련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고자 살생물제법이 지난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화평법 및 산안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며, 산안법의 하위법령 및 화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세계 화학물질관리체계는 위해성 평가/관리를 중점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7년부터 시행한 REACH의 성공적인 정착과 2013년 시행한 BPR제도를 통해 국제 화학규제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흐름을 반영하고 기업 및 국내외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 화학규제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요이슈

1. 법안·고시 개정의 투명성 강화

현재 법안 및 고시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20일이라는 최소 의견기간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TBT에 신고하는 경우도 법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신규 지정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나, 물질 등록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유해성 여부가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함유금지물질, 함량기준물질 등은 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해성 평가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건의사항

법안 및 고시가 제개정될 경우 WTO TBT에 필히 신고하고, 이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기간(90일 이상)을 부여하길 요청한다. 신규 지정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여부 지정을 결정하기 전에 물질을 등록한 업체에 충분한 의견수렴기간이 주어지길 권고한다. 또한, 지정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길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 고용노동부

2. 국내 화학관련 법률의 중복규제

살생물제법에서 안전성을 확인 및 승인받은 생활화학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의 관리 대상이다.

또한, 화학제품의 경우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성분 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화관법' 및 '산안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를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 해야한다. '화평법' 및 '산안법'에 따른 영업비밀심사 또한 두 부처에 각각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건의사항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 확인신고제도'와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안법의 유해성·위해성 조사'에서 자동 면제될 것을 건의한다. 더 나아가 '화관법 확인신고제도' 또는 '산안법 MSDS·미기재성분 제출' 중 하나의 법률에 따라 제출하면 상호 인정되며 '화평법' 또는 '산안법' 중 하나의 영업비밀심사를 받을 경우 상호 인정될 것을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 고용노동부

3. 변경신고와 변경제출의 시기 및 기준

'화관법 확인신고제도의 변경신고'와 '산안법 MSDS·미기재성분 변경제출'에 대해 변경 대상범위가 서로 다르면서 제출시기를 '즉시'로 규정한다면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정부기관이 얻는 실익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사항

'화관법 확인신고제도의 변경신고'와 '산안법 MSDS·미기재성분 변경제출'

의 대상범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제출시기를 분기별 1회 제출로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화학안전과)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성분정보 제출 제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반 화학물질과는 달리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에 의해 사용이 되어 화학물질 사고 및 노출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대부분 개발 단계에 사용되는 것으로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화관법’ 및 ‘산안법’에서 요구되는 성분 정보 제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건의사항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산안법’에 따른 MSDS 작성 대상은 유지하되 제출 대상 및 비공개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한다. 또한,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는 하되, 성분내역서 제출은 제외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화학안전과)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5.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와 ‘제품 안전법’의 보완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 최근 몇년간 환경유해성으로 인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고, 그 지정 함량이 1%로 정해져 혼합물인 제품까지 유독물 지정 함량 이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전의 의약외품에서 이관된 경우 화관법 적용 제외였고, 당분간 유예기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임시적인 상황이다.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은 제품안전법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형태 및 사용 방법을 고려할 시 장외영향평가 및 유독물 물질의 취급 관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보관·운송·판매처의 관리 어려움 등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건의사항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을 제외하고, 유독물 지정 함량 이상의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사고 대응에 대한 규정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살생물제법’을 보완할 것을 건의한다. (예, 제품의 표시 사항에 응급 조치 추가, 소매점을 제외한 보관소에 제품의 MSDS 비치하도록 함)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6.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함유제품 신고

현행 ‘화평법’ 및 중점관리물질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별표1의 204개 물질 외에 2021년도 7월 1일 시행되는 별표 2의 468종의 물질에는 STOT이기에 추가된 물질이 25종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지정된 중점관리물질 총 672개의 물질 중 479개는 유독물질, 17개는 사고대비물질, 41개는 제한물질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및 추후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제도 하에서도 환경부에 제품별로 물질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는 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되지 않은 중점관리물질은 180개 (전체의 약 27%)에만 해당하며, 이중 35개 및 78개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이다. 즉, 화평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거나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되지 않는 중점관리물질은 67개에 불과하다.

건의사항

중점관리물질 지정 기준에서 STOT을 삭제하길 요청한다. 또한, ‘화관법’ 개정(안)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제도 하에서 환경부에 제품별로 물질에 대한 중점관리물질 여부가 신고가 되는 경우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제외 대상에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7.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연간 소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의 제조·수입량으로 인해 등록의 의무를 지는 것은 업계에 큰 부담이다. 또한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의무가 없는 소량의 제조·수입 물질을 심의하는데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

건의사항

연 제조·수입량이 신규 100kg 이하 또는 기존 1톤 이하인 경우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합산에서 제외되거나, 연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이 신규 10톤 및 기존 100톤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한다. 또한 CMR 보다 높은 유해성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국내 총 제조·수입량에 합산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8. QSAR 자료 제출

현 '화평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QSAR자료가 허용되고 있어 다수의 독성 자료 (최대 47개)가 요구되는 고분자 등록에서는 오히려 대체시험자료가 활용될 기회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이미 생성된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데이터 생성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10년동안 4만여종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QSAR자료 활용 및 허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10톤 이하 등록 시 QSAR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평가기관의 잦은 보완요청으로 등록기간이 늘어지고 있으며 보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산업체에서는 대체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건의사항

QSAR 자료 허용기준 (10톤)을 생략하여 보다 원활한 대체자료 허용을 권장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QSAR 자료 평가 및 보완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자료 분석이 제출자와 평가자 상호간 잘 받아들여 지고, 산업계가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9.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제도 간소화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에 대하여 등록이 면제됨을 신청하여 확인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수입자 외에 실사용자 (연구개발자)의 연구내용과 운반계획, 처리계획 등의 내용과 서명이 필요하다. 제조·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계획서를 수령하지 않고서는 수입·제조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샘플이 연구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늦어진다. 연구개발자는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서류 작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면제임을 허가 받는 신청제도를 없애고, 회사 자체적으로 연구용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남겨두도록 하고 추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의사항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화평법'에 따른 등록 등 면제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 자체 판단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거나, 면제확인 절차 없는 단순 신고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0. IT System: 대리인 제도에 등록·면제 건의 정보보호

환경부는 화평법 상에서 허용되어 수입자·선임자로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인이 등록·면제한 물질의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해외업체·선임자는 해당 물질의 등록·면제를 취하하고 별도의 OR선임을 통해 등록·면제를 비용을 들여 재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말 화학물질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유예기간 종료됨에 따라 10톤 이상 등록·제출되었던 경우는 새로이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취하된 등록·면제 물질의 경우에도 시스템상 기록이 남아있어 실질적인 정보보호가 불가능하다.

건의사항

대리인으로 등록·면제한 물질에 대해서는 금번 도입된 물질정보양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OR의 계정으로 이관되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취하된 등록·면제한 물질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1. 유해성분류 고시 전 의견수렴기간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하여 기재출한 유해성 자료와 상관없이 (또는, 유해성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요청없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유독물질 지정은 산업현장에서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른 추가 규제사항 (시설기준 및 영업 허가 등) 준수가 요구되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외국에서는 MSDS에 공개되지 않지만, 국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면 MSDS상 공개되어야 하므로 해외제조사들이 국내 시장 신제품 출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건의사항

EU REACH의 경우, SVHC 물질로 등재하기 전 해당물질의 등록업체, NGO, 산업협회 및 EU외의 국가로부터 최소 수개월 이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처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 및 고시하기 전 유해성 분류·심사와 관련된 추가 시험자료·과학적인 기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6개월 이상의 의견수렴기간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2. OR의 간접수입 등록 한계

국내에 공급되는 화학물질 중 간접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수량이나 개수 등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간접수입의 경우 CBI 공개와 관련하여 OR로서 수량 및 수입자 정보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등록 (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 등의 절차 진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행 화평법 벌칙 또는 과태료가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 한다는 규정은 선임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건의사항

영업비밀로 인하여 간접수입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OR에 대한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된다. 간접수입과 관련하여 EU REACH의 수입자 정의 도입 등 간접수입자와 관련한 별도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3. 유해법 때 유해성심사받은 물질의 OR 신고

유해법 때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은 물질은 선임자로 신고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 유해성 심사를 받은 등록 물질은 선임자를 통한 신고가 불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해당 정보는 (해외)회사 등의 영업기밀로서 공개되지 않아 등록 통지서를 공유 받은 자는 신고를 위한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영업기밀이 수입자 (고객)들에게 공개될 경우 회사는 막대한 영업손실로 인해 제품 사업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등록자인 컨설팅 업체의 폐업·인수합병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이동의 경우 원등록자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선임자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추가적 대안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형평성과 영업기밀보호를 고려할 때, 유해법 때 유해성 심사를 받은 등록 물질은 기존등록자가 선임자로서 신고하면서 관련 수입자 목록을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결과 통지서를 공유받은 자는 검증 필요시 수입량 증빙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4. 기술지침서 마련: 등록면제 대상 Article

현행 '화평법' 상,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일명 Article로서 업체가 자체 판단하여 등록면제 된다. 그러나 시장 내 제품형태가 다양한데 반해 Article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이나 예시가 없어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체 간 의견이 자주 엇갈려 ‘화평법’ 이행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또한 ‘화평법’ 상 등록면제 Article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화관법’ 상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된다.

건의사항

EU REACH처럼 등록면제 대상 Article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산업계가 자가 판단하는 데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업체 간 혹은 정부와의 견해차를 좁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률의 이행 및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위해, 국내 지침서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유럽 지침서에 기반한 판단을 최대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5. 변경 등록 및 변경신고 기간

현행 ‘화평법’ 상으로 통수 범위가 변경되거나 OR의 경우 수입자 목록이 변경될 시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하나, 공급망이 복잡한 국외제조자의 경우 통수 범위 변경 및 수입자 목록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료를 생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건의사항

수입자 목록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추가 자료 생성이 필요한 통수 범위 변경, 유해성/위해성 정보 변경, 용도 변경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 2, 3호’에 해당되는 변경등록의 경우 기간을 6+6개월에서 1+1년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6. 고분자 등록

현재 발표된 고분자화학합물 등록·면제에 대한 지침서는 고분자 공동등록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준과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건의사항

기본적으로 고분자 등록은 그룹 제출을 허용하고, 등록 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것을 건의한다. 단, 1,000톤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선별된 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7. 저우려고분자 및 신고대상 고분자화학합물에서 중점관리물질 요건 삭제

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의 저우려고분자 미반응 단량체 중 중점관리물질이 0.1%이상인 경우 산업용이나 소비자 제품 용도 구분 없이 저우려고분자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중점관리물질은 EU REACH의 SVHC의 개념으로 산업용이 아닌 소비자 제품 규제를 위해 도입되어 이미 제품 수준에서 (예비)신고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우려고분자 심사 시에 산업용까지도 소비자용 중점관리물질을 바탕으로 규제하면 산업용 물질에는 과도한 요구라 여겨진다.

건의사항

‘시행령 11조 2항 저우려고분자 조건’ 및 ‘저우려고분자 신고대상 고분자화학합물 질 고시 제2조 4호’ 중,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 화학물 항목에서 중점관리물질을 삭제, 또는 산업용도에 한해서는 중점관리물질 확인을 면제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8.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자료 생략

살생물제품에서 pH 조정제, 색소, 향료 등 제품의 안전성 및 효능 효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에 대한 별도 유해성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non-GLP 또는 read-across 자료 수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

건의사항

혼합물의 유해성·위해성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환경 및 인체 독성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non-GLP 및 read-across 자료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19.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인정 기준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을 인정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는 유사성이 인정되나, 해외법에 따라서는 살생물물질 뿐만 아니라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도 요구된다. 또한 해외에서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동일한 제품 유형으로 승인 받은 경우만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U BPR의 경우,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동일한 제품 유형으로 승인된 경우는 거의 없다.

건의사항

해외법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닌 '살생물물질'이 수입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경우 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승인 받은 살생물물질의 분류(살균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 기타)가 국내 분류와 유사한 경우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0. 기존 살생물물질 추가 신고

2019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가 있었지만, 짧은 기간으로 인해 신고가 미쳐 이루어지지 못한 물질들이 있으며, 살생물물질 업체가 신고를 하

지 않았으면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 업체들은 유예기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살생물물질 업체가 사전 신고를 하였더라도 유예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제품 업체 및 살생물처리 업체도 타격을 받게 된다.

건의사항

'화평법'의 늦은 사전신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살생물제품 유형별 승인 유예기간까지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한 추가 신고를 인정해주기를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1.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기준

현행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표시는 함량기준이 없어 ppb 수준의 미량이 들어있어도 제품에 표시를 해야 한다.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및 중점관리물질의 확대로 인해 제품에 표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늘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 물질 표시에 있어 함량 기준(0.1%)을 마련하여 일정 함량 이상의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품안전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2.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기준의 국제적 조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내 함유금지물질 및 함유물질 함량기준이 비의도적으로 유래되어 미량(trace level)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품유형간 조화되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도 상이하다.

건의사항

세정제 및 섬유유연제등의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의 검출한도기준은 최소한 한국 및 국제적 화장품 등의 안전기준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슷한 제품유형간 함량제한기준의 조화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3. 위생용품에 대한 중복규제

기저귀, 주방 세제 등은 식약처에서 위생용품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평법’ 및 ‘살생물제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화관법’에서 타법 규제 품목으로 제외되지 않고 있다.

건의사항

위생용품법에 의해 관리받는 대상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4. 화학물질확인신고 및 화학물질정보 중복제출

화학물질확인신고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번호가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는다면, 확인번호 발부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 통관에 차질이 생겨 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 확인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성상, 용도,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유해성 분류 정보는 화평법에 따른 물질등록과 산안법에 따른 MSDS 제출 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에 각각 제출해오고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신고를 위해 동일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이다.

건의사항

화학물질확인신고는 심사·허가없이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처리되는 단순 신고제도여야 하며, 시행초기에 막대한 신청으로 업무 지연이 발생함으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화평법’ 및 ‘산안법’에 따라 물질등록 또는 MSDS 제출을 위해 동일한 정보를 제출한 사업자는 화학물질확인신고 시 해당 서류의 제출이 면제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화학물질확인신고

화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선임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및 화학물질확인번호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평법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해 화학물질 등록이 이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화관법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은 중복적인 행정 절차이다.

건의사항

사업자가 중복적으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도록 ‘화평법’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해 OR선임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국외 제조자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서류 제출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6. 화학물질확인번호의 구성

제품의 성상, 유해·위험성 정보, 성분함량,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화학물질확인번호가 부여될 경우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며, 확인번호의 구성이 복잡할 경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확인번호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번호로만 구성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기를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7. 화학물질확인 변경신고

화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확인신고제도’의 경우 이전의 확인명세서 제출

과 달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즉각적인 신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의사항

제품 특성이 적은 수의 구성성분 및 구성비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자료의 제출이 아닌 일정 기간 (분기별 1회)을 제출시기로 정하여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화학물질 확인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유해성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환경부의 ‘살생물제법 안전확인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산안법’에서도 관리할 경우 중복 규제에 해당하며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산안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살생물제법에 따라 확인 및 승인 받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내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의 법률 ‘화평법’과 상이하여 ‘화평법’에서는 등록 제외 대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면제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의 ‘화평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복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므로, ‘화평법’과 동일한 면제기준을 ‘산안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건의사항

일반소비자 생활화학제품은 산안법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제되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기준을 ‘화평법’과 일치하기를 제안한다. (전량수출 톤수 제한 삭제, 고분자화합물의 면제 조건을 미반응 단량체로 변경, 표면처리 시 반응하여 생성된 화학물질 추가)

관련 법률 및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29.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기재 성분의 경우 원료공급자로부터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제조 또는 수입 전 제출이 어려우며, 이 경우 제품의 국내시장 유통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건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제조 또는 수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 유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3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제출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26에 따르면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으로 인해, 혼합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변경된 MSDS 제출하도록 한다.

건의사항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변경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허용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3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 제출 자료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동법 110조 1항과 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 유해성 분류가 있는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과 분류되지 않는 성분 정보 혹은 이를 대체하는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사료된다.

건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시에는 영업 비밀의 구성 성분 정보만 제출하여 심사하기를 건의한다. 만약 영업 비밀 성분 외의 성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비공개 승인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자동으로 면제되도록 하고, 분류되지 않은 성분의 확인은 확인명세서로 갈음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박안숙

이사,

화장품 위원회

개요

화장품 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문화산업이다. 소비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편리하고 개인 소비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세계 화장품 시장은 친환경 경을 표방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 그리고 개인 맞춤형 제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신규 시장의 확대와 함께 온라인 채널과 헬스&뷰티숍 그리고 멀티숍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의 부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포함하여 바이오헬스 분야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이슈1.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및 표시의 합리적 도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여 짧은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어 다품종 소량 품목 수를 생산 및 관리하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에 대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더구나 화장품 용기의 경우 제품 구성요소(예, 철제 스프링) 등의 이유로 현행 등급 평가 및 표시 기준을 적용시 재활용 등급 평가 및 표시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크다.

건의사항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에 대한 적용 제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화장품 용기 재질의 등급 평가 및 표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원재활용법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2. 천연 관련 표시 광고 인증 범위

한국의 경우, IS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천연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기농/천연 화장품 인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를 표시 광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제적 조화에도 어긋난다.

화장품위원회

건의사항

해외에서 통용되는 국제기준 (예, ISO index 등)을 포함하여 천연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에 따라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장품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판매증명서 제출 요건 개선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화장품 수입 시 구비요건 중 하나이다. 하지만, 판매증명서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품질 또는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판매 증명서의 제출을 위해 각 국가의 화장품 협회 등을 통해 서류 제출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각종 서류 준비 비용 및 제품 통관의 지연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판매증명서는 한국에서 중국과 같은 시장에 진출 시에도 요구되고 있으나, 한국이 선제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수출 시에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의사항

판매증명서를 수입자(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책임유통업자) 법인 서류로 대체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외무역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4.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출 서류 개선

통합공고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구비요건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의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충분히 보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책임자의 서명이나 수입자(등록된 화장품책임유통업자)의 사용인감 등록 등의 추가적인 장치로 보완을 할 수 있다. 공증 절차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에 비해 소비자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건의사항

수입 구비요건자료의 공증 절차 삭제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외무역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5. 표준통관예정보고 기재 항목 개선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수입업체의 경우 배합량을 입력해야 한다. 제조증명서로 이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 배합량을 확인받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국내 제조품의 경우 원료목록보고시 배합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합량 기재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이다.

건의사항

표준통관예정보고 기재 항목에서 배합량을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외무역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6. 수입통관시 전자 문서 인정

제조기록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대외비 정보인 처방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원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실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정부에 제품 심사 등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전자 문서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통관예정보고에도 물리적인 서류이동이 아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건의사항

수입통관시 구비서류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외무역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7. 제조원 표시 삭제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마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제조판매업등록번호,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품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제조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조원이 바뀔 때마다 조성이나 명칭이 바뀌지 않았음에

도 매번 신제품으로 재등록해야 한다. 다수의 제조원을 가지고 있으나 본사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제조원의 주소를 제조회사 본사의 대표 주소로 표기한다면, 수입자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건의사항

제조원 명칭 및 주소를 삭제하거나 제조원의 주소를 제조회사의 대표 주소로 표기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장품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8.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및 범위

맞춤형 화장품은 조제관리사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증이 있는 인원만 소분 및 혼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장에 반드시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조제 관리사 부재 시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시행 초기 조제 관리사 배출 현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고 계약 및 회사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분한 교육과 함께 소분 등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며, 최종 판매업자에게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준다면 위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건의사항

해당하는 맞춤형 화장품(소분 및 혼합)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고, 회사별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인원이라면 소분 및 혼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요청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화장품 원료를 혼합하지 않고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고, 소분에 따른 오염도가 낮은 품목들은 맞춤형 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될 권고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화장품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9.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범위 확대

자외선 차단제의 SPF 표시 관련, 해외 제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5의 배수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예, 유럽의 SPF 표기 가이드라인), 국내 규정(-20% 이하 범위내 정수)에 따르면 5의 배수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 SPF 13,14,19) 이에 따라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차단지수 표기가 달라져서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건의사항

-30% 이하 범위내 정수로 표시하도록 표시 범위의 확대를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0.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자료 확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적용 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적용 시 효능·효과 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분야 전문의사, 연구소 또는 병원 기타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행·평가된 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 별도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조군 비교시험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후비교를 인정하는 국제적인 조화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건의사항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과학적, 합리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는 경우 타 기능성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대조군 비교시험 뿐 아니라 전후비교 시험이 인체적용 시험 자료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1. 부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의 제재 대상에 “행위자” 추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표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가 없는 경우 “광고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가 행위자에게 계약상 표기 의무를 강제하는 노력을 취하더라도 실제 행위자의 표시물을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이상, 관리 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다. 사실상 행위자의 우월적 지위나 파급력을 감안할 때 행위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의사항

부당 표시·광고의 규제 대상으로 “행위자” 또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
패션 및 유통 위원회

개요

한국 소비자들의 패션 수요는 높으며 이들은 대체로 유럽계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호감을 가지고 있다. 국내 패션 시장은 2019년 말까지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이 많은 패션 및 유통업체들이 한국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일조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해외 여행 경험 등 역시 유럽계 브랜드에게 이점으로 적용한다.

7년전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한국으로 직접 선적되는 다양한 유럽연합 국가의 섬유 및 가죽제품에게 특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많은 유럽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들은 실질적인 수입과 영업 과정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수입 패션 상품에 대해 특히 과학계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주요이슈

1. 직접운송 요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 13조는 본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들은 주로 허브 지역을 통하여 상품을 유통시킨다. 그러나 FTA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재분배하기 위하여 허브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FTA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며 몇몇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비즈니스를 할 때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어졌다.

건의사항

이에 유럽연합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환경아래 재포장과 재분배를 허락하는 한-EU FTA의 현대화 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한-EU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 가격표시제 규칙 관련

12.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시 영장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조사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 영치”의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일종의 강제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기업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방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조사관들이 수시로 이를 언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건의사항

영치가 사실상의 강제조치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13.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범위 및 형식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조사시 특별한 조사 기준이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조사 목적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구두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공문을 팩스로 전달하는 것은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직무와 무관한 직원도 공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문서 보관의 보안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건의사항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의 기준을 기업에게 사전 고지하고, 통상의 영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목적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자료만을 정식 문서를 통해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문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패션및유통위원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 5조 3항에 따르면, 가격의 표기는 1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쇼핑몰에는 적합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국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한 일괄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브랜드 전략을 시행해오고 있는 명품브랜드들에게는 규정을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가격표시에 있어서 글자 크기 등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에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준을 설정할 때 산업계 및 협회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3. 안전/품질표시제 산성도 규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의 가정용 섬유제품 4.1항에 제시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의 pH 레벨은 화장품의 pH규제 레벨보다 엄격한 4.0에서 7.5사이를 유지해야 된다.

가정용 섬유제품이 화장품보다 직접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면이 적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용 섬유제품의 pH의 규제는 화장품의 pH규제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섬유제품은 3가지 카테고리 나뉘어지며, 각 카테고리에는 다른 pH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유아용 제품 pH 4.0 ~ 7.5; 직접 피부 접촉 물질 pH 4.0 ~ 8.5; 비(非)피부 접촉 제품, pH 4.0 ~ 9.0)

건의사항

가정용 섬유제품은 화장품보다 소비자의 실제 피부에 접촉하는 면적이 적고 영양이 한층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당국에 pH 레벨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관련 정부 부처: 국가기술표준원

4. 유아용 섬유제품의 수입 과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2018년에는 (3세 이하)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부속서가 수정되면

서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18년 11월부터 유아용 섬유제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일일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통관을 진행해야 된다.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하나의 성적서가 여러 제품을 인증해주었다.

변동된 절차로 인해 수입 및 통관 절차가 이전 대비 3배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또한 하락하고 시험인증비용 및 창고 보관료가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제 시험인증기관에서 안전하다고 검증한 제품을 판매하고 준수율 또한 높은 유럽계 회사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의사항

준수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유아용 섬유제품을 확인하여 진행하기 보다는 물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준수율이 높은 회사가 자율안전확인우수기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세법

관련 정부 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5. 유아용 섬유제품의 시험 인증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2018년에는 (3세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부속서가 수정되면서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18년 11월부터 유아용 섬유제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일일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하나의 성적서로 여러 제품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였다.

아울러,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진행한 시험 결과는 수용되지 않는다. 국제 규정과 안전기준이 조화되지 않는 것은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며, 수입품에 어려움을 줄 뿐더러 한국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다.

건의사항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적인 시험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외 시험인증 성적서를 인정해주기를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정부 부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 규제 변동 사항 관련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전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각국의 다양한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 왔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들은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인 경험에 따라 축적해왔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들은 관련 정부 기관들과 규제 개혁에 관한 현재 혹은 미래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이 규제로 인한 모든 변동 사항을 전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변화가 생기면, 기업들은 복잡한 생산 절차를 재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규제로 인한 변화가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 발표와 그 시행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에 따른 변동사항에 관해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규제 현황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다.

건의사항

규제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나 현 규제의 개정 작업의 초기에 국내와 외국계 기업들 모두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축적한 경험과 실질적인 통찰력이 사전에 공유될 수 있으며 원활한 규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다수

관련 정부 부처: 외국인투자증부조만

서효경

이사,

식품위원회

1. 농림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개요

2019년 4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 민관공동 TF (식약처, 농식품부, 전문가 그룹,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가 출범하였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2019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관한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18년 12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제품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 정도를 국가기관에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게 되었다.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중이며, 내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제품에 표시하기 위해 제품의 라벨 변경이 불가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식품¹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였고, 중량은 1,756만 톤으로 6.4% 증가하였다. 가공식품 수입액은 67억 달러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고, 중량은 6,009만 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2017년 가공식품 수입 금액 기준 제1 수입국은 중국으로 약 12.6억 달러이다. 이는 가공식품 수입액의 18.6% 규모이며, EU(28개국)로부터의 가공식품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17.7%를 차지한다.

주요이슈

1. 천연향료의 정의 및 규격 개선

CODEX 및 제외국 (EFSA, US FDA)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향료” 정의와 규격에 비해 한국에서 “천연향료” 로 인정되는 공정의 범위와 품질보존, 추출, 증류 등을 위해 허용되는 물질의 종류는 한정적이다. 제외국에서는 비의도적이거나 불가피한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열, 건조 등을 “천연향료” 공정으로 허용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추출, 증류 등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공정만 허용하고 있으며, 품질보존 등의 목적으로 물, 주정, 식물성기름만 첨가할 수 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천연향료”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합성향료로 분류하거나 혼합제제로 표시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국제적으로 “천연향료” 로 구분하여 통용되는 물리적 공정 및 품질보존 등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들이 국내에서도 허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와 해외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형평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해외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에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는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축소 또는 정체되어 법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동일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기준 (평가표 및 현지 HACCP 기준 실사)과 동일한 혜택 (무작위 검사 면제)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의 경우는 해외실사 비용을 해외제조업소가 모두 부담을 하고 있으며, 추가 정부의 혜택 부여 계획이 없다.

구분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	해외우수수입업소 제도	비고
신청자	해외 제조업소	수입업소	
평가기준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	동일
해외실사 비용	해외 제조업소가 부담	정부 예산으로 운용	형평성 어긋남
혜택	무작위 검사 면제	무작위 검사 면제	동일
추후 계획	없음	계획신고제 도입을 통한 추가 혜택 (현 행정예고 상태)	형평성 어긋남

건의사항

해외우수제조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우수수입업소와 동일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우수제조업소 해외실사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운용하고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에 계획신고제 도입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 Non-GMO 수출국 표시 사용

한국에서 식품에 Non-GMO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GMO 사용승인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을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것.
- GMO 사용승인 6종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된 경우.
-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음.

유럽과 미국에서의 Non-GMO 표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사용이 승인된 원재료 중 유전자 변형 작물을 사용한 제품이 아닌 경우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존재하지 않는 원재료(예: 복숭아, 사과 등)에 모두 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Non-GMO 표시는 다양한 제품에 표시가 가능하다.

일본은 수출국에서 제품에 Non-GMO로 영문으로 표기 되어있으면 영문 표기를 그대로 둘 수 있다.

건의사항

Non-GMO 표시요건 개선을 검토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Non-GMO 표시대상을 GMO 사용승인6종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둘째, Non-GMO 표시 원재료 함량 조정. 셋째, 운반, 보관 등 혼입될 수 있는 미량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또한, 정부간 논의를 통해 EU 제품의 기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검토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4. 식품 수입검사 절차의 개선

동일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도 선적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표기 허용여부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표기내용 정정이 필요할 경우, 보세창고에서 스티커 부착 작업 및 해외 생산기지에 패키지 재고를 폐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 수입신고 시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이 다름.
- 사전 서류 검토를 허용하지 않으며, 현물의 수입 시점에 서류 검토 및 규격검사(이화학/미생물)가 동시에 진행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통관 지연에 따른 재고관리 부담.

해상운송 기간 및 유통기간이 짧은 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통관 시 서류 검토 및 보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이 절실하다.

건의사항

수입신고 시, 담당자의 변경과 상관없이 일관적인 수준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수입신고 전에 수입신고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한글표시사항을 미리 검토 받을 수 있는 사전 신고제와 연간 수입 물량을 미리 신고하여 수입하는 계획 신고제의 검토를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5. 한글표시 개정사항에 대한 각부처간 논의 필요

국무조정실 방침에 따라 각 부,처,청의 식품표시규제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일자 및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일로부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짝수년도 1월 1일로 통일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재활용표시관련 개정고시 논의 시 해당 방침을 언급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방침이 고려되지 않았다. 개정 사항 등의 변화에 대처하는 시간이 국내 제 조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수입식품은 충분한 경과조치 없이 주어지는 변화에 매우 불리하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행정적 절차에 의한 내용은 충분한 준비기간 및 경과조치 부여가 필요하다.

건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의 각 부처 표시사항 변경 적용의 정례화 및 체계화 그리고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희망한다.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안숙

이사,
헬스케어 위원회

1. IQVIA, market prognosis 2019-2023, March 2019

2. 2018 의료기기 생산실적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개요

2018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17조3천억원에 달하며 지난 5년간 CAGR의 6.4%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의료기기 시장은 6조8천억원(전년대비 +10.0%)을 기록했으며 평균 성장률은 8.1%다².

유럽을 포함하여 선진국 시장이나 중국 등의 신흥 시장 등 많은 국가에서는 각 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신약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시범 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스마트 임상 시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융합의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요이슈

1.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현재의 1GDP/QALY 및 암과 희귀질환에서는 2 GDP/QALY까지 적용되고 있는 ICER 임계값은 질병 부담 및 환자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GDP에 대한 기준이 오래되어 2013년 2만3,000달러 에서 2019년 3만1,940달러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할인율(5%) 및 EQ-5D tariff에 대한 기준도 오래되어 (10년 전 처음 도입 후 변화 없음)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질병의 중증도, 대체약제의 유무, 생존 기간 비율, 삶의 질, 혁신의 가치 및 사회적 요구도 등에 따라 보다 유연한 ICER 임계값 적용을 요망한다. 또한, 최근 GDP 데이터를 기초로 한 GDP 기준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제 외국의 할인율 및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인하하길 요청한다. 한 개의 HRQOL 측정값을 제안하기 보다는 보다 유연한 EQ-5D tariff 적용함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신약의 환자접근성 확보를 위한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의 범위 확대

경제성평가면제제도는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엄격하다. 희귀 질환에 대한 기준

헬스케어위원회

(200명 미만)은 희귀질환관리법(2만명 이하)와 맞지 않고, 따라서 200명 이상의 유병인구를 가진 희귀질환은 포함되지 못한다. 한편 A7 조정가는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져 시대와 맞지 않으며 적절한 가치 인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건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하는 희귀 질환에 대한 기준을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식약처의 희귀 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일치되는 것이 요청된다. A7 국가의 현재 가격 구조를 반영하고 업계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규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복합제 산정 기준 개선

복합제의 가격은 각 성분의 기준가격의 53.55%의 합 또는 각 성분 중 최고가의 가격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는 제네릭 산정기준에 근거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약제의 복합제인 경우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가 있는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의 경우 불리하다. 또한 혁신적인 복합제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이며 특허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건의사항

특허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망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산정기준 참조 (특허 만료 전 80% 및 이후 70%로 가격 조정)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4. 약가 협상 시 부과되는 새로운 요구조건의 개선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약가 협상 시 제약회사에 몇 가지 요구조건을 부과해오다 2019년 의견수렴기간도 없이 규정화 하였다. 일부 조건은 가격 협상과 관계가 없다. 이는 가격 및 보험과 관계된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변경 시 관련 업계와 의사소통 하기로 되어있는 한-EU FTA 협정 정신에 위배가 될 수 있다.

건의사항

한-EU FTA 협정 정신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요구 조건에 대해 업계와 함께 미리 상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요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관련 정부 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5.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가격 우대 정책의 현실 가능성

2019년 1월에 개정된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가격 우대 정책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새로운 기준은 국내 및 다국적 기업을 막론하고 어떤 신약도 관련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의사항

한-EU FTA의 협력 정신에 따라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요망한다. 5개의 조건 중 3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유연성의 부여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험분담제의 대상 범위 확대

위험분담제는 보험자(지불자)에게 표시가보다 낮은 실제 가격으로 협상을 할 수 있게 하여 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의 보험약가 제도 하에서 보장이 힘들었던 고가의 혁신 신약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2월 위험분담제가 도입됐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여, 2018년 기준 23개의 약제만이 위험분담제를 통해서 급여가 되고 있다. 특히, 현행 위험분담제는 해당 계열의 최초 약제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후발약제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먼저 등재된 제품의 독과점 및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장벽과 같은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위험분담 계약의 종료시에도 일반적으로 4년의 계약기간과 1년의 연장기간을 두는데, 환자수가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필수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확대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건의사항

환자들이 후발 주자 약제들도 치료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발 주자 약제들에 대한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험분담제의 급여 확대 절차 및 계약 만료에 따른 재평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위험 분담 계약 기간 연장, 특히 환급 형태의 위험분담제의 경우 회사의 요청이나 제네릭이 등재될 때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길 요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위험 분담제 환급제 부가가치세 이슈

환급제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위험분담 계약제의 한 유형으로, 해당 제약사는 위험분담 계약 및 건강보험공단의 분기별 보험청구액 통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납부한다. 제약사는 고시된 상한금액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에 부가세 부분이 포함돼 다시 환급을 하고 있다. 공단에 납부하는 환급금은 재정 기록상 매출 차감으로 기록되나, 현행 규정상 부가세 조정기전은 없는 실정이다. 세금납부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과도하게 또는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호주, 이태리,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부가세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건의사항

세금 납부자(제약사)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부가세법 또는 환급제 절차/규정 개선을 제안한다. 부가가치세 규정과 건강보험 관련 규정이 일맥상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부처 간의 합동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 지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8. 신속 등재 제도 도입 (선 등재 후 평가)

위험분담제(2013)와 경제성평가 면제(2015) 제도의 도입에도 항암제와 희귀 질환에 대한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위험분담제의 적용 기준은 제한적이며 경제성평가 분석에도 다양한 종류의 근거가 요구되나, 희귀의약품의 경우 출시 전 충분한 근거 생산이 힘든 경우가 많으며, 경제성평가만으로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약제들이 장기간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것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현격히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급여 후 평가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암이나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도 '선급여' 이후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환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임상적 필요로 의약품의 신속 등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신속등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없다.

건의사항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요망한다. 특히 2020년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약품 등재 후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계약에 기반한 신속 등재 방안을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9. 제 4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국내에서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암관리법을 근거로 매 5년마다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은 호발암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돼 오고 있어, 전체 암 발생의 약 16%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희귀암 환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의사항

2021년부터 시행될 제 4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은 희귀암에 대한 진단, 치료, 생존자 지지 등 전반적인 희귀암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계획을 포함해 수립돼야 한다. 특히 희귀암 환자들이 적절한 시점에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암관리법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10.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중증 질환 약제비 계정” 등의 대안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공개하고 제약 업계를 포함한 관련 이해 당사자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

약제 재평가 등을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이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혹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중증 질환 약제비 계정” 등을 조성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정 사용 대상을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신약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제약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11.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개선

신약의 급여등재 시 업체는 첫 해 예상사용액을 제출해야 하며, 이보다 30% 이상 사용액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약가 인하가 이루어진다. 이후 전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10% 이상 및 50억 이상 증가를 하면 또 다시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다.

신약은 HTA검토와 가격 협상을 통해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절감효과 및 임상적 효용을 입증해야 등재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신약의 입증된 가치로 인해 보다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건의사항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외국 약가 비교 등의 다방면의 검토를 거치는 신약 등재 제도하에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재정관리가 필수인 상황과 같은 것 (예, 500억 이상인 약제의 재정 관리)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신약의 가치 인정과 건전한 재정 유지를 목표로 균형 있는 약가 및 급여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2. 제네릭 개수가 3개 미만인 최초 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산제도 유지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개정안 발표를 통해 제네릭의 개수가 3개 미만인 약제에 대한 가산제도를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 한다. 제네릭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제조 기술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낮은 가격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만료 약제의 가격이 이미 충분히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을 경우 시장에 공급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에 있어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다.

건의사항

특히 만료 약제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 철수 위험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되기 전까지 현재의 가산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최소한 특허만료 약제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가산기간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13. 약제 재평가, 약제비 적정관리(약제군 별 약가조정) 등 약제관리제도의 합리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합리적 건강보험 지출을 위한 제도로 보험급여 재평가 제도와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 등의 약제 군 별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하여 조정하는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재평가는 RWE의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한 이해와 신약의 등재 시 임상효능,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외국 약가 등 다방면 검토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신약은 다방면의 가치를 입증하여 등재되는데, 외국 약가 한가지 만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인다.

건의사항

정책 수립 시 RWD의 제한점과, 신약은 효과/비용효과성 등 다방면 입증 후 등재되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평가는 신속등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RWE가 검증 가능한 부분에 중점 두어야 하며, 다양한 가치를 입증해 등재된 약제를 외국 약가 하나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는 합리성과 당위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8. 환자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혁신적인 약물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승인 절차 마련

2018년 말 중국은 임상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신약 48개를 지정하고,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신속히 허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제품은 2019년 5월에 승인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혁신에 대한 우선 순위를 반영한 조치다. 참조 가격 정책(중국의 한국 약가 참조 정책)과 함께 한국은 신약 허가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건의사항

한국 환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신약에 대해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절실히 필요한 혁신적인 약물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인 임상자료를 면제하는 등의 신속한 승인 절차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9. 품목허가 갱신제도 간소화

품목허가갱신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으므로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품목허가는 5년간 유효하므로, 매 5년마다 품목허가 만료일 6개월 전에 갱신신청이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품목이 허가된 지 20년이 되었다면, 품목허가갱신은 4번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갱신 제출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은 품목허가유지관리 또는 안전성 정보보고의 목적으로 이미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이므로 갱신을 위해 재제출하는 것은 큰 유용성이 없다.

유럽에서는 갱신제도의 낮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처음 품목이 허가되고 5년이 되면 한번만 갱신을 진행하는 것으로 2005년에 규정을 변경하였다. 한번 갱신되고 나면, 규제당국에서 안전성, 미판매 등의 사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품목허가는 기간 제한없이 유지된다.

건의사항

유럽과 같이, 품목허가갱신 제도의 간소화를 제안하며, 처음 품목이 허가되면 갱신은 5년 후에 한번만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 유럽연합과의 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제도 개선

유럽과 한국 간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이 없으며 국내에서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자가 품질관리 시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GMP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 GMP 평가를 위한 방대한 서류가 요구되며 실태조사를 위해 상당한 해외 출장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2018년 한국은 스위스와 GMPMRA를 체결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협정 체결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허가 기관 간 중복 실태조사를 줄여 위해도가 큰 제조소에 집중하여 더 많은 제조소를 관리할 수 있다. 향후 GMP 상호인정 확대 및 수입 의약품의 품질관리 시험의 상호 인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의사항

GMP 및 품질관리 시험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확립하도록 유럽연합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1. 혁신적인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요건의 개선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제3상)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제2상) 자료로서 항암제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2010년 신속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조건부 허가 제도 또는 미국식품의약청(FDA)의 신속심사제도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식약처는 제2상 임상시험의 대리평가변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극히 희귀한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제2상 임상시험과 동일한 환자군에서 치료적 확증 제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조군이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제를 받게 되는 윤리적 문제, 후기 질환 단계에 대한 치료제가 없거나 유효성이 낮음 등을 사유로 그러한 임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건의사항

치료적 확증 시험을 치료적 탐색 시험과 다른 환자군(난치성이 낮거나 질병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요건을 개선하고, 드문 희귀 질환의 경우 환자의 추적자료(예, 전체 생존) 또는 대리평가변수(예, 객관적반응률(ORR)) 자료로 허가하여 의약품 신속 도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2.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승인 검토 과정 중 추가자료 요구

글로벌제약사들은 종양학, 면역학 분야에 연구개발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 분야는 다양한 병용치료가 다른 인구집단에서 상당한 이점을 보이므로, 많은 혁신적인 연구들이 제 I, IIa상 임상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식약처가 유럽, 미국 또는 일본의 규제당국보다 많은 유효성/안전성 자료를 요구하고, 한국을 위한 프로토콜 수정(예, 대상환자는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치료법에 실패한 환자이어야 함)을 빈번히 요구하기 때문에 식약처/중앙 연구팀 간 협상, 또는 연구설계 수정을 필요로 하여 적시에 초기 임상 승인을 받기에 어려움을 겪어, 결과적으로 글로벌제약사들이 보다 많은 초기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러한 초기 연구는 의료계에게 보다 과학적, 의학적인 가치가 있다.

건의사항

보다 많은 초기 임상의 국내 유치를 하기 위해, 국내 허가당국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의 빈도수를 줄여 임상용 신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3. 시판 후 조사 제도의 개선

한국에서는 신약 또는 새로운 복합제는 임상 시험 동안 나타나지 않은 약물유해반응을 관찰하고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품목허가 후 6년간의 시판 후 조사 기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임상에서 수집된 자료보다 추가적인 유용성을 보이지 못하며, 그러므로 이는 중복된 감시 제도로 보여진다.

또한, 해당 제도는 효과적인 전자의료기록(eMR) 사용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의 실제 임상 증거를 활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럽처럼 특정한 이익 또는 위험 프로파일을 보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시판 후 조사 요건에 집중하거나, 일본처럼 전자의료기록과 실제 임상 증거를 포함한다.

건의사항

시판 후 조사 제도로 전자의료기록(eMR)등 첨단 방식을 토대로 한 제도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4.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재 표시기재 적용 요건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재 변경은 의무이며 이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없으나 실제로, 변경 적용된 제품을 수입/출하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의약품을 수입하는 외국계 제약기업에는 2가지 선택만이 가능하다: (i) 규제기관의 승인 전에 새로운 포장재 적용된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충분한 수량의 이전 제품을 비축해 놓거나 (ii) 새로운 포장재 적용된 제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수입되는 모든 품목들에 대해 재포장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포장 또는 안전재고비축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 비용 및 자원이 들고, 환자에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재포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은 회사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건의사항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가 개선되는 방안으로, 다른 나라처럼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의 표시기재 적용 유예기간을 만들고 e-labeling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한다. 또한, 재포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5. 외국계기업에게 적절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의 보완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내 R&D발전에 공헌한 업체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세금, R&D관련 투자, 약가 혜택 등을 부여하여 국내 공헌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47개사 중 오직 4개의 기업만이 다국적 제약기업이다.

주된 제약 요인은 인증 기준이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외수출, 기술이전/외국기업과의 협업만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고, 본사가 CRO를 통해 직접 지불한 R&D비용은 비용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건의사항

국내 R&D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외국계 기업의 국내 R&D발전을 위한 열린 혁신 등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에게 기대할 수 있는 국내 R&D공헌 활동들을 포함하도록 외국계기업에 대한 인증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26.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의 수입 절차 및 사후 보고 절차 간소화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방식약청에서 식약처에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승인서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의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가능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일부 개선 (2017년) 되었으나, 여전히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 문서 및 정보 제공이 상당하다. 해외 시판 중이지만 국내 미허가 제품은 국내 수입요건 확인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인증 문서(예, EU CE 인증서)를 제출함에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제조국에선 판매가 되지 않아 제3국 인증서를 제출하면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연구용 목적으로만 개발된 의료기기(주로 튜브)에 상업용에 준하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제하는 등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선 요구하지 않는 사용계획서나 사용 후 폐기 보고서를 따로 요청하고 있다.

건의사항

해외 시판 중이나 국내 미허가 제품의 허가 증빙자료 완화 및 연구목적의 부수적 의료기기의 확인서 면제 내용 가이드의 반영을 요청한다. 아울러, 확인서 신청 시 사용계획서 면제, 사용 후 폐기 보고서 자체 관리로 갈음 또는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수입품목대상 신고로 허가절차를 갈음하는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7. 동물유래 품질검사 시약의 통관 검역절차 간소화

동물 유래 품질검사 시약은 수입 검역 절차에서 현지 품질검사 및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검역을 위해서는 수입국과 제조국 양쪽에서 중복된 인증 명세서가 필요하다.

건의사항

한-EU FTA 2 제4.6조 적합성 평가 및 인정 항목에 따라, 통관 시 제조국의 중복적인 확인서류 제출없이 유럽 선적국가의 확인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지정 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관련 정부 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8. 매 수입 배치(Batch)별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제출 면제 요청

유럽에서 오래전에 광우병이 발생했고 이후 진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입하는 모든 백신 품목은 수입할 때마다 매 배치별로 Certificate of Suitability (COS) 번호와 공증을 받은 광우병 미감염증명서의 원본을 의약품수출입협회로 제출하여 통관에 정 보고승인 후 통관 진행하고 있다.

최초 제출된 COS 서류는 이미 유럽 의약품 품질 위원회(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에 의해서 공식 증명된 서류이며, COS 번호 또한 매번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서류에 기재하여 매 배치별로 공증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로 인해 제조처의 업무과다는 물론 공급차질과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유럽산 의약품에 대한 수입 비관세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건의사항

특히 COS 서류의 변경으로 인한 COS 번호의 추가나 변경이 아니라면 최초 수입에만 관련 서류를 공증 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향후 공급지연 없이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 배치(Batch)별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의 제출 면제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약사법,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업통상자원부

29.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부과 면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부과는 2016년 한-미 FTA와 한-EU FTA 시행으로 면제되었다. 하지만 국내 다수의 다국적제약회사들이 미국 또는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관세 및 부가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28개의 다국적제약기업은 2016년 115억원, 2017년 140억원의 세금부담으로 인한 임상시험 비용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의사항

임상시험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관세법 시행규칙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30. 예방접종비 제도개선

여러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콤보백신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접종되고 있다. 콤보백신은 접종 횟수를 줄여줘 영유아의 주사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백신의 완전접종률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한국에서 콤보백신이 좀더 널리 접종되기에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 중요한 한가지는 의사의 백신접종료 제도이다. 현재 백신접종료 제도는 병원에서 콤보백신을 접종하면 모노(단독 항원)백신을 여러 번 접종할 때 보다 더 낮은 접종료를 받게 되어있다. 즉 백신접종료가 예방접종 전체일정에 기초하여 설계되지 않고 백신접종건수에 따라 지급되도록 되어있어 잦은 접종에 더 많은 접종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추후 더욱 개선된 복합 백신 도입 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건의사항

영유아의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여주고 접종율을 향상시키는 복합백신의 지속적 개발과 도입을 성본(항원)수에 따라 접종료를 정하고, 접종률 향상에 기여한 병의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길 요청하며, 모든 백신의 접종비는 각 접종건수가 아닌 접종일정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질병관리본부

31. 수입백신 및 의약품의 중복적인 품질검사시험 개선

식약처는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중복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제조생산처에서 진행되는 품질검사와 수입국 실험실에서 추가로 품질검사 시험을 수행해야한다. 국내제조사의 경우 자체 제조처에서 진행되는 단 한번의 품질검사만 진행하면 된다. 한국의 이러한 이중 기준적용은 이례적이며, 국내 수입사에 제품 출하 지연 및 기술이전, 교육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시키며 국내제조사와 수입사 간의 차별문제를 야기한다.

건의사항

신속한 출하가 필요하고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 생략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한-EU FTA 정선에 따라 생물학제제, DTP 포함 백신 등에 대하여 국내 중복품질검사를 우선 면제하고, 국내사와 수입사 간의 국가검정 일정도 통일하고 단순화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2. 백신 제조(수입)사의 품질검사 전 항목 시행 규정 철회

현재 생물학제제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조(수입)사에서 진행되는 것과 함께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국가출하승인 품질시험에서 진행되는 품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백신 수입사에서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신속한 통관처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식약처는 수입사 품질검사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모든 생물학제제 수입사는 국가출하승인 품질검사 항목과는 무관하게 모든 품질검사시험 항목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출하승인 품질검사는 수입사의 품질검사와 별개의 규제당국 품질 확인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결국 백신(생물학제제) 품질 보장의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이 수입사에게 새로운 행정적인 업무수행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건의사항

한-EU FTA에 따른 적합성 평가 수용 요청 항목에 따라 해외생산처에서 수행한 품질검사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논의를 요청하며 국가출하승인 품질검사 전 항목 실시 요구로 인한 수입 품목의 이중 검사 규정을 완화해 주기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3. 의료장비 수리 부품에 대한 KC 인증

의료기기장비의 수리를 위하여 부품을 별도로 수입할 경우,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이 허가증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 부품에 대한 KC 인증(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전안법에 안전 인증) 미비로 인하여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건의사항

기 허가된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이라면, 허가증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제조원 증빙이나 한-EU MRA³ 강화 등의 방법으로 부품에 대한 KC 인증을 면제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정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34. 치료재료 가격조정 방식의 합리화

정부는 가격 인하에 수입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인하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건의사항

수입가격 대신에 실거래 가격을 사용해야 하고 마진율은 유통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김시윤

대리,

보험 위원회

개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보험위원회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계 보험사들을 대변하여, 업계와 정부간 소통의 매개체로서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촉진시켜서 한국의 사업환경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ECCK 보험위원회는 정부가 보험상품 고객들을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들이 우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CCK 보험위원회는 그와 같은 규제환경의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지향하되 보험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
-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명확하고, 시장상황 및 정책 목표에 부합하되, 신규 규제 신설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 보험사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예측 가능하고 공백없는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 감독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밀접한 협력
- 모든 시장참여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일괄적 규제보다는 혁신을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

주요이슈

1.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장 폐지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4만건 발생한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지불하면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3자를 사망하게 하면 살인으로 간주된다.

건의사항

형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현행 법규는 개정되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피해자 또는 보험금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의 조건들을 변경함으로써 자동차 가해자로부터 100% 구상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역시 OECD 국가들과 같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1년 및 3천만원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해외의 처벌 수위는 다

3. 전파법에 따른 KC의 경우, 현재 한국과 유럽은 1단계 MRA가 체결되어 있어, 유럽 성적서를 토대로 한국에서 다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 2단계 MRA가 체결될 경우, 유럽의 CE 인증만으로 국내 진입이 가능.

음과 같다. 프랑스: 징역 최대 7년 및 1억2천만원의 벌금, 영국: 징역 최대 14년 및 운전 면허 자격 박탈 2년 (벌금 상한액 없음), 일본: 사건에 따라 징역 1-20년(30년까지 가능), 미국: 주 별로 상이함 (뉴욕의 경우 징역 최대 25년, 워싱턴의 경우 사형 선고 혹은 종신형).

관련 법률 및 규제: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정부 부처: 법무부

2. 자동차 부품 가격 인상 사전 고지

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구 영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 정비 표준 수가 및 시간을 공표한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가격의 경우 언제, 그리고 얼마나 가격이 인상될 것인지는 공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대체 부품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18년 평균 부품 가격 인상률 15%는 보험사의 손해율로 전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보험료(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의사항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관련 현행 법규는 개정 되어야 하며, 부품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및 등록하여 보험사 및 일반 대중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개정되길 요청한다. 또한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대체 부품 가격 인상은 1년에 한 번 대물 및 자차 담보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보험료에 인상된 정비수가를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3.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

보험사 고객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와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네트워크관리 지침’ 제15조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청약 시, 디지털 공인 인증서,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매년 거쳐야 한다. 보험료 건적은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고객들은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면서도 계속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의사항

보험사들이 자체 본인 인증절차 방법을 적용하여 리마인더와 함께 고객 본인 인

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 (예, 디지털 공인 인증서 및 동일한 IP 주소에서 동일 기기 접속 등을 이용해 디지털 플랫폼에 이미 로그인을 마쳤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험료 건적을 받은 고객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건너뛰고 해당 동의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이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는 고객 편의를 위해 한층 더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보험업법 시행령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4.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정비 시간 공표

국토교통부는 국산 자동차의 표준 정비 수가 및 시간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그러한 기준이 없어 정비소와 보험사간 분쟁으로 종종 이어지곤 한다. 한국에는 현재 2백만대 이상의 수입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등록 차량 대수의 10%를 차지한다.

건의사항

수입차에 대한 연구 영역을 통해 표준 정비 수가 및 시간을 공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5.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요청
보험업법 제10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출 등을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신용보험의 취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므로 신용보험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신용보험은 대출자에게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출자의 빚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대출금 갚아주는 보험’으로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보장 장치이다. 신용보험은 (i)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대출 건전성 향상 (ii)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집(주거) 보호 (iii) 가장 취약한 가계 지원 및 과잉 채무 방지 (iv) 금융포용성 촉진 (v) 보험사에 혁신적 성장엔진 제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한다.

건의사항

2018년 7월 30일 박선숙 의원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 행위 등) 제2 항을 신설하여 신용보험을 구속성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

지식재산권 위원회

1. WEF (201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3. In a consumer survey conducted by ECCK in 2019, 44% of consumers indicated to have purchased counterfeit products, ECCK (2019), Busan Consumers' Perception of Counterfeit Products 2019.

지식재산권위원회

개요

지식재산권(IPR)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물 즉, 지식재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간이다. 지식재산권으로 잘 알려진 권리로는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표권과 제품(전체 또는 일부)이나 제품의 장식의 시각적 외관을 보호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디자인권, 그리고 기술 혁신을 보상하는 특허권이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총 140개국 중 4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단, 한국의 순위는 2018년 대비 상승했지만, 아직 유럽의 여러 국가들 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3위), 일본(11위) 및 대만(29위)에 비해서 뒤처져있다¹.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국내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 취해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환영한다. 해당 조치들은 2018년도 ECCK백서에 포함된 건의사항들과 부합하는데,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 외에도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산업 디자인, 특허권, 품종보호권에 완화된 세관 신고 요건이다.

2019년 ECCK백서에는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이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이슈

1. 위조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연구

2018년 말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수치화한 연구를 발간하였다².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차지했으며 약 600백만명을 고용했고 비지식재산 집약산업 대비 평균 50%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수치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새로운 입법에도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및 OECD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수치화한 연구를 바탕으로 위조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연구 등의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도 후속 연구에 유용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ECCK의 조사 결과³, 국내 소비자들은 위조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위조산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정도를 수치화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의사항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고려하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 세계 무역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위조산업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유용할 것이다⁴.

관련 정부 부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협력 부족

각 기관마다 단속 공무원들의 집행 권한의 범위는 다르지만 권한이 겹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집행 전반에 있어서 뿐 아니라 특정 사건에 많은 수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 기관들이 효율성과 단속 집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자의 인력을 모아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울러 한 기관의 단속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가 다른 기관의 단속 공무원들과 공유되지 않아 단속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건의사항

OECD는 “협력 강화와 국제 공조 체제의 범위 확대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내외의 단속 기관들은 물론, 기업들과도 정기적으로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 것을 건의한다.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단속 권한을 부여 받은 모든 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다수

관련 정부 부처: 모든 관련 부처

3. 지식재산 범죄에 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제 61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일치하고 동일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구금 및/또는 벌금을 포함”하는 형사적인 절차와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법’ 침해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침해 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6. European Commission (20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처벌 수위는 “범죄를 적절하게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체계적 결함’으로 지적되었다⁶.

건의사항

단속 기관과 사법 기관의 공무원들이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수치에서 나타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심도 있는 조사, 적극적인 기소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다수

관련 정부 부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4. 국경조치

ECCK는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계획을 환영한다.

관세청이 또한 2018년 11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8조 제2항을 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합리적인 변화에 따라 적발된 불법유통상품들은 발송자에게 반송되는 대신 압수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물량은 2018년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2019년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위조품의 세계 무역량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⁸, 세관 공무원들은 더 많은 위조품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건의사항

무역활동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화물에 대한 적정 검수율을 유지하고 검수 담당 세관 공무원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역량 개발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수출입 물품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검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관세법

관련 정부 부처: 관세청

7.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8. Frontier Economics (2017), The Economic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5. 병행수입

병행수입 물품은 진정상품이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었으며 지식재산 권리자의 인가없이 판매된 것이다. 병행수입은 공급망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표권자에게는 관심 사항이다.

한국은 국제 권리소진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어떤 시장에서든 일단 지식재산 권리자 혹은 권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에 의해 상품이 판매되면 해당 상품의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권리자는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의 재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병행수입은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단, 병행수입 물품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위조품업자들은 이렇게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행 수입품과 위조품을 혼합해서 수입하고 있다.

건의사항

병행수입 물품이 일반 수입품보다 더 쉽게 통관되는 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모든 수입품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관세법

관련 정부 부처: 관세청

6. 자유무역지역(FTZ) 환적화물 단속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총 1,132개의 회사가 운영되는 13개의 ‘자유무역지역’(FTZ)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무역, 외국인 투자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적인 행정 규제가 완화되고 관료주의적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FTZ가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FTZ는 “위조품업자들의 활동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위조품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로 전략¹⁰⁾”하였으며, “계속해서 수많은 지식재산권 범죄와 연관 지어지고 있어 조화로운 단속 기준이 필요한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¹¹⁾”하고 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절반 이상의 컨테이너들이 부산항을 환적항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검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FTZ는 여러 정부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건의사항

OECD는 FTZ의 악용 가능성에 비추어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ECCK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i) FTZ에서의 활동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개선할 것 (ii) FTZ 관할 기관들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할 것 (iii)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 (iv) FTZ에서의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정책을 수립할 것.

관련 법률 및 규제: 관세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관세청

7.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ECCK는 소비자, 기업 및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조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취지로 ECCK는 2013년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기업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울의 유명 관광지에서의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장에 따라 여러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 운영시간(밤 9시경부터 새벽 5시까지)이나 상인들의 은밀한 수법 또는 순전히 시장의 규모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서울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러한 단속 의지에 (중앙정부기관이나 지자체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들의 구조적인 지원이 제한적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

다른 대도시 지자체에서도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행위를 조사하고 위조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검찰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외에도 모든 관련 기관들이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모든 관련 부처

8. 유사상표 단속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의 위조품 단속 활동은 증가하였다. 위조품업자들은 위조품의 압수 및 폐기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저명한 브랜드 명성에 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브랜드 제품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되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것이다.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법 침해로 간주되지만, 단속 활동은 주로 동일 상표를 사용한 물품 압수에 치중되어 있다.

9. Europol and OHIM (2015), 2015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in the European Union.

10. OECD/EUIPO (2018), Trade in Counterfeit Goods and Free Trade Zones: Evidence from Recent Trends.

11. Europol and EUIPO (2017), 2017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European Union.

12. OECD (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단속 활동을 동일상표로만 제한하는 것은 위조산업에게 유사상표 사용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건의사항

단속 공무원들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물품도 압수할 필요가 있다. ECCK와 회원사들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단속 활동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상표법

관련 정부 부처: 모든 관련 부처

9. 온라인 매개자들의 자정 노력

최근 십여 년간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였다. 위조산업 또한 이 같은 추세를 따라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의심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법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외 국가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의 리스트를 발표하였다¹³.

2017년 국내에서도 '온라인 시장의 역할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터넷 시장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품 유통을 근절할 수도 소비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도 없다. 유럽집행위원회 또한 각 국가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를 한층 더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¹⁴.

또한, 일부 인터넷 매개자들은 이들의 서비스가 위조품 판매자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매개자들마다 이러한 조치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건의사항

한국에서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매개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인터넷 매개자들에게는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i)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의 도입; (ii) 효율적이고 신속한 게시 중단 절차; (iii) 위조품 판매자의 ID와 계정 삭제.

관련 법률 및 규제: 상표법

관련 정부 부처: 특허청

1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Sale of Counterfeit Goods via the Internet.

10. 온라인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최근 십여 년간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세계적으로 급증하였다. 위조산업 또한 이 같은 추세를 따라 인터넷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의심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법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위조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인터넷 매개자, 상표권자 및 유관협회 같은 이해관계자들간 대화를 도모하여 서로 협력하여 자발적이면서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양해각서(MoU)¹⁵가 체결되기도 했다.

유럽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올해 3월에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ECCK는 이러한 협력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인터넷 매개자, 상표권자, 한국 및 유럽연합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건의사항

인터넷에서의 위조품 불법 유통은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모범사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관련 정부기관, 인터넷 매개자, 상표권자 및 유관협회)간에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인터넷을 통한 위조품 판매 양해각서(MoU)와 같은) 자발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이 가능해진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상표법

관련 정부 부처: 특허청

16.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베른 협약 포함

11. 저작권 및 사용료

한국은 여러 국제 조약¹⁶과 더불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도 서명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저작자, 제작자 및 공연자 등의 공연권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음반이나 영화, 그리고 공연 및 방송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보호한다. 하지만 해당 법의 제 29조 제2항은 사용료 지불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저작자, 제작자 및 공연자에게 공연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시행령에는 면제 적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울러 저작권료를 또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음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13. European Commission (20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

14. European Commission (20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건의사항

모든 음반 저작자, 제작자 및 공연자가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면제 범위를 좁히고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 보상금 기준을 설정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저작권법

관련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12. 표준필수특허

오늘날의 유비쿼터스 연결 시대에 국제 표준은 핵심이다. 과거에는 지역마다 도입된 이동통신 기술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노력으로 표준화된 국제적인 통신 기술이 탄생되었고, 종단(end-to-end) 시스템 실현과 전세계적인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었다.

5G는 향후 10년동안 자동차, 건강, 에너지, 농업 및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업계의 니즈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물 인터넷(IoT)에 필수적인 자동화 및 데이터 교환을 지원할 것이며, 교통, 공공 안전 및 방위와 같은 사회적 기능에도 핵심이 될 것이다.

5G와 IoT가 제공하는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구현하려면 이동 통신 기술의 표준이 전세계적의 기업들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과 경쟁이 가능한 프레임 워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육성되고 건전하고 개방적인 기술 생태계가 뒷받침될 것이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최신 기술에의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이다.

건의사항

새로운 통신 기술 표준이 개발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시장 주도적이고 개방적이며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주된 요소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권리를 부여해주어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개방형 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특허법

관련 정부 부처: 특허청 & 공정거래위원회

13. 기술 수출 관련 규제의 모호성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와 그 규제에 대한 모호한 해석 때문에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창출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i)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과 (ii)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적 기술/자료'의 해석상의 모호함 때문에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에 제한이 있다.

건의사항

'국가 핵심 기술' 및 '전략적 기술/자료'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여 그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14. 손해배상액 산정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원고의 일일이익; (ii)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 (iii) 합리적인 통상실시료. 또한, 배상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해 재량으로 손해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독일, 일본,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주로 합리적인 통상실시료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¹⁷.

건의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법부는 합리적인 통상실시료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종사자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통상실시료의 액수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받아들이는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상표법

관련 정부 부처: 법원행정처

15. 법정 손해배상 제도

'상표법' 제 111조는 법정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있으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이

17. 조영선 (201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규제 법리의 재검토 - 경과실 금액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선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소송에 있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효과도 없다.

건의사항

법정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현 상한선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적절히 책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상표법

관련 정부 부처: 특허청

16. 규제 개정 전 논의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전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각국의 다양한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 왔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들은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인 경험에 따라 축적해왔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들은 관련 정부 기관들과 규제 개혁에 관한 현재 혹은 미래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이 규제로 인한 모든 변동 사항을 전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변화가 생기면, 기업들은 복잡한 생산 절차를 재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규제로 인한 변화가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 발표와 그 시행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에 따른 변동사항에 관해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규제 현황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다.

건의사항

규제가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나 현 규제의 개정 작업의 초기에 국내와 외국계 기업들 모두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축적한 경험과 실질적인 통찰력이 사전에 공유될 수 있으며 원활한 규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다수

관련 정부 부처: 모든 관련 부처

서효경

이사,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주방및소형가전위원회

개요

주방·소형가전 위원회의 관련 부처는 식품을 담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식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가전 중 전기용품 안전인증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 (MOTIE)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KATS), 전자파적합성 인증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 산하 전파연구원 (RRA)이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시스템인 환경성보장제 (EcoAS)는 환경부 (ME) 산하 한국환경공단(KECO)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생활가전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입량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한국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무역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먼저, 식품용 기구, 용기의 경우 식품 접촉 재질 및 색상 별 식품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를 이용해 작동하는 제품은 전자파인증 (EMC)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두 가지 인증의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인증을 거쳐 수입이 가능하다.

인증 절차와 수입통관 절차는 체계적으로 운용 중이나, 간혹 한국 안전기준의 더딘 업데이트 혹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안전기준 등의 사항이 해외 제품의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이슈

1.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저울의 경우 현재 최대 측정 용량 1kg 이하는 수입 요건이 단순한 반면, 1kg 초과 제품은 계량기 형식 승인 필요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특히, 전가식 지시 저울의 경우 소스 프로그램 등 제품 핵심 기술과 관련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생산업자가 정보 노출을 꺼려 한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 및 요청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가정용 저울은 상품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목적에 비해(가정용) 과도하게 정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제품만이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지나친 규제라고 사료된다.

건의사항

형식승인 대상을 ‘상거래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용량과 관계없이 ‘가정용’은 형식승인 면제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2. 전기용품안전기준 최신버전 업데이트

전기용품안전기준-휴대용 밀폐 2차 전지안전 (KC62133)에서 국제표준인 IEC62133 (2013년 12월)을 채택하고 그 이후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 최신 기준인 2017 버전의 결과는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신제품의 CB는 최신 규격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2012년 성적서를 수출국에서 받을 수 없어 국내 시험 기관에서 직접 시험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지 (battery pack)는 21개의 시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 발급한 CB로 진행할 때 3개 시료만 제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량으로 수입업자의 비용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항공운송의 경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수량의 제한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수입해야 한다.

건의사항

해당 기준의 최신 규격을 채택하여 인증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전기용품안전기준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3. 국내 전기용품안전기준 국제기준화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의 적용 범위 수정에 (2015년 7월) 따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휴대용 전지가 안전 확인 대상이 되었다. 휴대용 전지란 휴대할 수 있는 장치나 기기에 사용되는 전지를 이야기하며 그 형태에 대한 정의는 없다. 대부분 보호회로가 단전지와 함께 팩 형태로 감싸져 있지만, 소형제품은 기기의 기판에 보호회로와 단전지가 결합된 팩이 아닌 부품 형태이다. 해당 제품은 내부 회로를 노출시킨 상태로 시험(진동, 충격 등) 하는데, 이를 위해 완제품이 아닌 부품 형태의 기판과 단전지 세트를 시험하기 적합한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특수한 기준으로 해당 국제 기준이 없어 상황을 수출국에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건의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 대상 제품의 인증 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국제표준과 부합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이 전기용품의 안전을 시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국제표준에도 제안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전기용품안전기준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크리스토프 하يدر

총장,
물류 및 운송 위원회

개요

국내 물류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 요소이다. 이의 경쟁력은 세계 은행 (World Bank)이 발행하는 물류 성과 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나타나며 2018년 한국은 25위를 차지했다. 수출입 감소에 따라 국내외 수송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이 추가 비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운송 수단을 항공에서 해상 수송으로 변경했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구매함에 따라 국내 특급 배달 시장의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의 존립에 대한 과제는 일정 수준의 노동 정책이나 보다 구체적인 임금과 근무시간 및 가까운 미래 특정 전환 기간 및/또는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재정적 장려금에 머물러 있다. 끝으로 관세청의 효율성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한-EU FTA의 일부 개정은 관세화 절차를 빠르게 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이슈

1. 통세제도

국적선 증대 및 해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선주협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5년 5년기한의 한시적인 통세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통세제도는 2019년도까지 총 2번 연장되었고, 2019년도 연말에 일몰 예정이다. 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통세제도 5년 연장안을 포함한 2019 세법개정안을 공표. 국무회의에서 8월 27일 결정 후, 9월 3일 국회로 제출, 2019년 12월 투표 진행 예정이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CK)에서는 통세제도를 2020년부터 5년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2019 세법개정안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2. Cabotage 허가

Cabotage는 국내항간 운송에 대하여 연안해운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선박 (BBCHP 포함)을 제외한 외국적선박에 대해서 동운송권리를 주지 않는 Cabotage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전용선을 확보한 연안운송선사가 없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일시적으로 3년간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Cabotage를 허용했다. 2019년 6월, 해양수산부는 일시적으로 다음 3년

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허용할 것을 공표했다.

건의사항

2019년 6월에 다음 3년 연장을 허용 할 것을 건의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된 선사들중 자동차화물의 연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없다. 즉, Cabotage 허용으로 인하여 내항선사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내항 내 치장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정기적인 연안운송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일시적인 허용 정책에서 지속적인 허용으로 변경이 요구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선박법 제6조 (개정 2013년 3월 23일)

관련 정부 부처: 해양수산부

3. 지속가능성 & 친환경 관련 법 및 과제 (1)

국제해사기구 (IMO) 는 2030년,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엔진 기술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건의사항

다국적 기업 (MNC)은 2050년까지 무공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엔진과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경쟁력 있는 선박회사를 찾고자 한다. 선박 산업 내 오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부 파트너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함께 찾고 협력해야 한다. 국내 정치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환경적 도전과 혼란,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위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IMO가 제시한 계획이 기후 및 대기 질 관련 의회 활동에 포함 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해양 엔진 및 엔진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제해사기구

관련 정부 부처: 해양수산부

4. 지속가능성 & 친환경 관련 법 및 과제 (2)

좌주 (beaching)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선박 해체 방식으로 환경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MNC는 20년간 막대한 비용으로 선박 재활용을 진행해왔으나 관련 운영업체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사항

일부 선정된 MNC들은 2018년 3월, 선박 재활용을 위해 SRTI를 설립하여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범 확립.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서는 initiative가 연장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박 건조 산업 내, 오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정부 파트너들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함께 찾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부처 및 정치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통해 다가올 환경적 도전과 혼란에 대비하고, 한국 조선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후자는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한국 산업 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제해사기구

관련 정부 부처: 해양수산부

5. 지속가능성 & 친환경 관련 법 및 과제 (3)

IMO는 2020년 1월부터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건의사항

단기간안에 목표 달성하고자 선주들은 현재 사용중인 유종보다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황유에 대한 세율을 줄임으로써 규정에합유 의 빠른 도입 및 경쟁력 제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제해사기구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6. 직접운송 요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 13조는 본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들은 주로 허브 지역을 통하여 상품을 유통시킨다. 그러나 FTA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재분배하기 위하여 허브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FTA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며 몇몇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비즈니스를 할 때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사항

이에 유럽연합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환경 아래 재포장과 재분배를 허락하는 FTA의 현대화 작업을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한-EU 자유무역협정 제 13조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7. 중계 거점을 통한 직접 운송/운송 방식 변경

상품은 열차를 이용해 유럽에서 아시아 항구로 운반된 후 L&T 서비스 제공업체가 최종 목적지 한국행 선박으로 재선적하는 방법을 포함해 L&T 서비스 제공업체 (예: 카타르와 같은 비 EU 국가의 항공사 거점)의 재위탁을 위한 중계 거점을 통해 유럽에서 한국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배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청 (KCS)으로부터 이를 간접 발송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한-EU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경우는 운송 발신자가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KCS에 의해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ECCK의 의견이다. 운송 경로의 선택과 그 운영 방식은 직접 또는 간접 운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CCK는 KCS가 공통적인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내부 통신문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한-EU 자유무역협정 제 13조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

조선 및 해양 위원회

조선및해양위원회

개요

2018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860만 CGT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조선사는 선박제조의 주요실적인 컨테이너선과 LNG선 수주에서 세계 수주액의 4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9년 세계 상반기 선박 발주량은 1026만 CGT로 전년 대비 42.3% 감소했으며 한국은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시장 침체로 인해 전체 수주량의 30.8% 점유율을 차지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공급과잉과 급격한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규모 축소와 임금동결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승인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제품과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현지화 전략을 지속해왔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게 장벽이 된다.

주요이슈

1. 해운조선업 국산화 정책

한국 정부는 조선해양기자재 국산화 추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비용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지화 정책이 수입품을 대체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제품을 공급해 오던 외국기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 조선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요구 수용을 위해 외국 공급업체를 바로 배제한다. 또한, 해외기업의 독점 기술을 통합한 제품에 대해 해당 공급업체에게 기술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도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국산화 정책은 해외 공급 업체의 대 한국 투자 및 직원 수 감소, 운영 규모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므로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건의사항

정부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장비공급 업체와 한국 장비제조 업체 간 기술협력을 촉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술력을 침해하는 제품은 어떠한 산업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지적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장려되어야 하며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재산 침해 관련 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 정부 부처: 해양수산부

2. 표준일치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 생산 비용 감소 및 경쟁 증가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는 새로운 시장의 침투 또한 촉진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제2.4조'가 표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이유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은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한국 승인 취득이 요구된다.

표준화의 부재는 무역 활동에 장벽이 되어 외국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건의사항

한국에서 준수하는 표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이미 일치화된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중 시험을 피하기 위해 해외 인증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다수

관련 정부 부처: 해양수산부

3. 불공정 구매계약 조건

2018년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 기업에 대비하여 하도급업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 조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조선소의 공급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에는 서면 계약 체결 전 제품 납품 요구, 배치 변경에 대한 과도한 요구, 일방적 단가 인하 등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약 체결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또한 포함된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스템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약관과 조건을 수용하라는 요구 사항이 우려된다.

건의사항

투명성 보장을 위해 표준 구매 협정의 실질적 사용 강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하청업체가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한다.

또한, 개정된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표준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4.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한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생산원가를 밑도는 총비용 입찰 등 국내 조선소 수주 입찰에 약탈적 입찰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불공정하게 경쟁을 저해하고 제품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기술의 현상 유지, 연구개발 투자 감소, 기술혁신 저해 등을 초래한다. 또한 이는 사업의 지속 불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건의사항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안전성, 기술, 품질 및 사업 경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이슈

1. 한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보안승인

하청계약(절충교역 포함) 수행 과정에서 유럽에서 한국기업으로 기밀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해당 한국기업이 기밀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시설 보안승인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G2G: 방산물자 등의 정부간 거래) 받아야한다. 대기업을 위한 승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승인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방위사업법 제 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면 총 89개의 방위산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방위산업체는 국방부의 '방위보안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일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중소 방위산업체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방위산업체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한국에는 전체 1,427개의 방산물자 (441개의 완제품, 986개의 부품)가 있다.

건의사항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시설 보안 승인 절차가 확립되어, 정부간 거래(G2G)에서 시설보안 승인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방위사업법 제 35조

관련 정부 부처: 방위사업청

2. 절충교역 프로젝트 선발 절차 개선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제안서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팀에 제출된다. 이 제안서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여러 기관에서 심사, 평가를 받게 된다.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답변들을 중복적으로 각 심사 기관에 제출한 후, 추가절차 없이 프로젝트의 승인 혹은 거절 통보를 받게 된다. 외국기업은 여러 심사 주체들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다.

그간 외국기업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항상 거절되었던 이유는 불투명한 의사결정과정과 피드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승인 거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다면, 향후 진행될 절충교역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시간 소모적인 행위가 되며 아무런 발전없이 거절이라는 통보만 반복해서 받게 될 것이다.

건의사항

절충교역 프로젝트 제안 절차를 개선을 요망한다. 의사결정 기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적인 대면 발표기회를 허용하여, 제안된 절충교역 프로젝트의 내용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 및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

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상호간의 이해도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기관들이 거절된 제안서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채택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련 정부 부처: 방위사업청

3. 한국의 준법 회사 화이트 리스트

한국의 절충교역 규정에 따라 큰 규모의 방위사업은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협력하여 국내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 항공 및 방산업체들은 국제 준법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 가운데 한국정부 (예, 방위사업청)가 승인한 적합한 방위사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외국기업이 파트너 회사를 찾을 때 한국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준법 회사 화이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공식 협회가 각각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한국회사가 외국기업과 함께 방위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인증 또는 확인해 주기 희망한다. 또한, 날짜가 명기된 해당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건의한다.

관련 정부 부처: 방위사업청

4. 일관성 없는 설명회 참석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방산물자 공개 입찰 시, 방위사업청 내의 각각의 통합사업팀들이 관련 입찰 규정들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다. 특히나, 설명회 참석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차이가 많다. 입찰자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글로벌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한 서류를 10일 이내 (입찰 공지로부터 설명회까지)로 제출하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따른다.

건의사항

방위사업청 통합사업팀 가이드라인에 사본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술해 주기를 희망한다.

관련 정부 부처: 방위사업청

5. 대표이사 서명 요건

다양한 서류에 대표이사 서명을 요구하는 방위사업청의 요건은 위임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제적 관행에 배치된다.

해당 회사 임원에게 특정한 위임 없이도 입찰 제안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기술된 사업자등록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실상 글로벌 대표이사에게 입찰 서류에 일일이 서명하게 하는 점은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취지에 위배된다.

‘방위사업청 규정 제 415호 (입찰자 일반 지침)’은 각각의 다른 양식에서 입찰자의 대표자, 사장 그리고 대표이사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담당자는 위임장을 지니고 있는 대표자의 서명을 용인하는 반면 다른 일부 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다.

건의사항

위임장의 의미와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한다.

관련 정부 부처: 방위사업청

개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하여 이뤄내야 하는 범지구적인 과제이다.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발간한 ‘2019 SDG Index & Dashboard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SDG Index부분에서 19위에 오르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CO2를 배출하는 한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 및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녹색성장 실천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데 있어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향상이 각각 40% 및 35%를 차지하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한 반면, 한국은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OECD 35개 국가들 중 33위에 이르며 최하위에 머물렀고, Enerdata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전체 전기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4% 불과했다.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 목표를 달성하고 파리협정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환경 정책과 규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요이슈

1.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규격

현재 한국의 전기차충전 시스템은 IEC 61851-1 Edition 2.0 (2012년 11월 개정) 및 IEC 61851-22 Edition 1.0 (2011년 1월 개정) 규격을 따르고 있다. 2017년 개정된 IEC 61851 Edition 3.0의 경우 상당한 기술적 변화를 포함한 향상된 안전규격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을 위한 공급 장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기존 IEC 규격을 인용/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신 개정 이전의 규격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전기자동차 사용자 및 기반 시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의사항

개정된 IEC 규격을 적용하여 소비자 및 운영시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누전에 대한 보호의 경우 개정된 IEC 규격의 경우 내 노이즈 성능이 확보된 S타입 및 B타입 등의 누전차단기 사용을 제한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전기용품안전기준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관련 정부 부처: 국가기술표준원

2. 신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정책 간의 일관성: 액체 연료 내 바이오 연료 의무 비율

액체 연료 내 바이오 연료 혼합은 에너지 제품 판매에서 탄소 집약도 감축하고 파리 협정 목표 (EU 통합 비율: 2020년까지 10%)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유럽 내 바이오 연료는 수송부문에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 방법이며, 또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 감소 효과를 가진 자원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디젤 연료 내 3%, 가솔린 연료 내 0%까지 등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를 위한 생산 용량도 제한하고 있다.

건의사항

수소처리 식물성오일 (HVO), 디젤 및 가솔린의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 비율 향상과 한국 내 HVO 생산을 위해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세 우대를 희망한다. 더 나아가 국내 HVO 생산에 인센티브, 수출시장 개척기회 및 2·3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3. 가스 발전소 개발 장려

석탄 대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안하면,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30-35% 목표로 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가스가 극복할 수 있다. 계획대로라면 발전원 내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이고, 이것은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때,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포함한 가스 발전은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없는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LNG에 대한 정책은 덜 우호적이다: (i) 개정된 LNG 및 석탄 세금제도에 따르면 석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수입 부과금 및 관세가 LNG에 대해서는 각각 3.8 및 7.2 이다. (ii) 2018년도 석탄 소비량이 2.4% 증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석탄에 비해 가스의 발전 순위가 뒤쳐져 있다. (iii) 가스 인프라 (터미널 + 파이프라인)에 접근하기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프라의 규모는 제한적이어서 추가적인 개발을 요한다.

건의사항

상대적인 환경적 혜택에 맞추어 LNG에 대한 -석탄에는 부과되지 않는- ‘관세 및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고, CO2 배출에 따른 환경 비용을 발전 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 산정에 포함 및 더 많은 가스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충분한 여유 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REC를 할당할 것을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관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거래소

4.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

현재 REC는 전기생산을 해서 직접 및 간접으로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 부여되고 있고, 이러한 공급은 발전사를 대표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준비된 입찰을 통해 부여된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REC를 부여하지만, 현실은 주로 태양광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한국에서 개발 (사업부지 등)하기가 어렵다. 발전사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중/소규모 (0.2-2MW)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장기 전력공급 계약에 소극적이다. 신재생 에너지 촉진을 위한 정부의 REC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

건의사항

전기 자체소비를 위한 전기생산에도 REC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폭넓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히트펌프 등)에 대한 장기 전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장기 전력판매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해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5. 건물의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한국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제적으로는 건물 운영 중 또는 생애주기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및 주변주거지에 대한 영향성까지 확장한 미국 녹색건축위원회의 친환경건물 인증제도 (LEED) 또는 영국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BREEAM)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건의사항

G-SEED를 건물의 전체 생명주기에 대해 확장하고, 특히 건물의 사용에 있어 에너지효율 및 성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검사, 검증)

관련 법률 및 규제: 녹색건축 인증 기준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6.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접근

전기판매 시장에 있어 제3자 (서비스공급자)가 전기를 판매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저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솔루션 제안하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독점공급자 (한국전력)는 한국시장에 대해 자회사인 캡코에너지솔루션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유럽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건의사항

개별기업이 저탄소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에너지 발전, 공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에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2030년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에너지관리 서비스 시장참여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전기사업법

관련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7. 국내 수자원관리에 대한 접근

한국수자원 공사는 공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정수, 상수관망, 하수, 폐수와 같은 수처리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민간 산업시장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건의사항

먹는물 수질개선, 유수율 향상 등의 서비스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일반기업도 정수, 상수관망과 같은 관리 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 부문에서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여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정부 부처: 환경부

8. 스마트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가속화

한국 정부는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주요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 시티 수출을 가속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EU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업체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유치 전략에 EU 최고의 스마트시티 파트너와의 통합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은 국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파트너와 함께 하는 통합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건의사항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설계·리빙랩·디지털 트윈과 같이 EU의 선도기술을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한-EU간 협력을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대형복합개발이 친환경적이며 스마트한 기술과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한, 세계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로부터 배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EU간 정기 워크숍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주요이슈

1. 빈번한 규제 사항 변경 및 짧은 규제 변경 통지 기간

IT 시스템 변경 시 다소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사항을 3개월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내 (때때로 즉시)에 시행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감독기관이 금융회사에 단기간에 준비가 불가능한 특정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건의사항

새로운 규제 요건 도입 준비 및 자료·정보 준비와 관련하여 보다 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길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금융관련법규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 비즈니스 모델 및 가격 결정권에 대한 감독기관의 영향력 행사

회사의 금융상품의 가격 결정권을 규제하는 특별한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회사들에게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현금-신용카드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가격결정에 직접적인 규제를 취한다.

건의사항

금융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상품 가격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정권은 금융회사에게 주어지길 희망한다.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규율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3. 새로운 규제 사항의 소급 적용

새로운 법규를 해석만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새로운 표준 약관, 최고이자율 등)

건의사항

새로운 규제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를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4.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감독기관의 유연성 부족 및 논의에 대한 회피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신청들(예, 신규 약관 승인, 업무위수탁 등)에 대하여 회신 및 승인 속도가 느리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항 도입 방법 논의를 회피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태도를 보인다.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감감독기관과 해당 이슈를 논의하는 데 제약이 있다.

건의사항

감독기관이 새로운 법규 및 규제의 취지 및 의도를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고, 금융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하길 요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5. 가계대출총량제 적용시, 취급규모를 고려하여 적용

일부 자동차 금융 회사들은 기존 사업 정체에 따른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고차금융을 시작하여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총량제로 인하여 신규대출 취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의사항

가계대출 총량제 적용 시, 신규업체의 취급규모 등을 감안해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6.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취급 허용

보험대리점 업무는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경우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나, 자동차금융을 취급하는 캐피탈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상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관련 보험을 포함한 토탈 자동차금융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자동차 금융과 그와 연관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제공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의사항

자동차금융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보험대리점 업무 취급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보험업법

관련 정부 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주요이슈

1.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공휴일 수를 보장해 주기 위해 1년 미만 입사자에게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만 1년을 채운 즉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기본 휴일 수를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1년 도달시 즉시 퇴사할 경우 총 26개의 미연차수당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되었다.

건의사항

입사 1년차에서 2년차 사이에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미연차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 법이 악용되지 않고 연차휴가 제공의 기본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근로기준법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2. 중소기업 혜택 적용 제외

국내 사업체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고용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계 자회사도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요건(예, 총 직원 수 또는 총 매출액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제 공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계 자회사들도 국내 중소기업들과 비슷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건의사항

중소기업에게 특정 혜택을 주는 일부 정책의 지원 자격 기준을 해외 본사 운영 기준이 아닌 국내 운영에 따라 설정해 주기를 요망한다.

관련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3. 주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소비 촉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근로

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구 사항이 엄격하게 적용됨으로써 작업량 예측이 어려운 기업이거나 해외 본사 시간대에 맞춰 업무보고를 해야 되거나, 혹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원들이 있는 경우 해당 법에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직종 항목을 늘리고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근로기준법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4.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법의 제 76조 2항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제 76조 3항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장이 취해야 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조항 내 명시된 용어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적용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의사항

근로기준법 제 76조 2항 및 3항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면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특히 관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포함한 업계와 단체에 미리 알리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근로기준법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5. 포괄임금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임금체계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에 비추어 몇몇 기업은 각종 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포괄임금제 자체의 유효성이나 유효로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건의사항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유효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발표하는 것을 건의한다.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6. 사기업 공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매장직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가 200% 늘어날 예정이다.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매장직과 사무직의 직업 특성상 업무 활동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주길 희망한다.

본 개정안은 입안 시 예견하지 못했던 여러 요소로 유통업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사항

유통업계가 추가 필요 인력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혹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7. 노동법의 유연화

한국의 노동법은 1960년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제조산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이후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고 개인의 지적 기여도가 중요 해졌다.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64%가 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창출되었고, 한국에서는 GDP의 58%를 차지했다.

개개인의 역량 기여도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은 각 직원이 지적 측면에서 개별 직무요구를 잘 충족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들은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개정하였다.

현 근로기준법은 서비스 경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일방적인 해고면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건의사항

근로기준법이 서비스 경제의 요구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을 희망한다. 특히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에 대한 대응 기회를 제고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근로기준법

관련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

1.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APA) 처리기간 및 방식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제거래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상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게 APA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과세당국 상호 합의 절차가 필요한 쌍방 APA의 경우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거의 3년이며 매년 담당자가 변경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양국 과세당국의 협의 기회가 적다.

건의사항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APA 담당 조직의 변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조법

관련 정부 부처: 국세청

2.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요청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수행하므로 감사보고서 발행 기한 (주주총회일, 보통 3월 중순-말)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나라의 법인세 신고기한 (중국 5/31, 미국, 프랑스 4/15, 호주 6/1 등)과 비교했을 때도 기한이 촉박한 것을 알 수 있다.

건의사항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신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법인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명확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반기 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관련 서식에 따르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 소득 등도 제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의사항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의 취지는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함이므로 서식 개정을 통해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소득세법

관련 정부 부처: 국세청

4.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 소득자가 법인(외국법인)인지 또는 개인(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외국법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어 사후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렵고, 외국법인 입장에서도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사후적으로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건의사항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미 지급되어 원천징수가 불가하고, 사후적인 구상권의 행사는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동 위약금·배상금은 기존 ‘법인세법’ 하에서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액 이내로 볼 수 있고, 외국법인과 분쟁의 소지도 있으므로, 소득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소득세법

관련 정부 부처: 국세청

5. 국내 특수관계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준용 기준 마련

국내 특수 관계인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시가를 검토하기 위해 이전가격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의사항

미국과 같이 국내 특수 관계인 거래 시가 산출 시 이전가격 규정 준용을 위한 법 개정 권고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법인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6.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통합/개별 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달리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므로 기한에 대한 혼선이 발생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납세의무자가 종종 발생한다.

건의사항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로 개정 권고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조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7. 금융회사를 위한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기존 양식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일반 회사를 위한 양식이라 금융회사의 여건과 맞지 않아 작성이 곤란한 항목들이 일부 존재한다.

건의사항

금융회사용 개별 기업 보고서 세부 양식을 제시해줄 것을 희망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조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 국세청

8. 소득 신고 시 국외 발생한 비용 또한 세액공제 항목 포함

국내에 5년 또는 그 이상 거주한 개인은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신고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더불어 과세된다. 이에 반해 국외 연금에 대한 납입 또는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의사항

공정한 국내의 세금 정산을 위해, 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공제 가능한 비용 또한 국내의 소득세 신고 시의 세액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 국세청

9. 채권 할증발행비용 국내외 소득신고 시 제외

국외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 이자 소득은 국내외 소득신고 시 과세된다. 액면가보다 높게 할증발행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자는 채권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더 높은 이자 소득을 받는다. 따라서 납세자는 높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높은 채권 매수 가격에서 비롯된 손실과 상계 되지 않는다.

건의사항

채권 투자는 공정한 과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할증발행비용은 국내외 과세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 국세청

10.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명확화

‘국조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1호’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불허하는 경우로 “신청인이 과거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 외에 해당 체납이 발생한 시기, 체납액의 크기와 체납의 기간 그리고 체납 사유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건의사항

체납이 발생한 시기 (과거 5년 또는 10년까지 소급해서 체납 여부 검토 등), 체납액의 규모와 체납 기간 (수십억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 과정에서 과거 세금 몇 만 원을 하루 이를 체납한 기록이 발견되어 해당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 2 조’에 대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체납의 예외로 보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체납 여부 판단 시 '국세'와 '지방세'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동 규정에서 '국세'의 체납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제: 국조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1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2조 3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법인 판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건의사항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법인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12. 다국적기업의 Cash Pooling 제도 참여에 따른 국외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룹 내 현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Cash Pooling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내 현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건의사항

다국적기업 그룹의 Cash Pooling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것과 유사함)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법인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13.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액도 손금 인정 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

한 지급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은 그룹 전체적인 인사규정을 바탕으로 개별 고용 계약서에 따라 상여금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단순히 한국 세법 요건 충족을 위해 본점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건의사항

외국계 회사들의 사업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고용계약서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액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법인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14.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시 상호주의 적용 국가를 정부에서 직접 열거할 필요 최근 ‘부가가치세법 24조’의 개정으로 전문 서비스와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상호주의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에서 전문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부가세 면제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실무적으로, 개별 납세자가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 또는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처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전문 서비스와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가세 처리 (부가세 면제 또는 영세율)를 하는 국가의 명단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납세자를 이를 근거로 영세율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부가가치세법

관련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1.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양벌규정)의 불합리한 확대 적용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으로, 제3국에서의 업무과실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에 있는 법인 (외국 법인의 지사)은 물론 이의 대표자에게도 이중으로 벌금형을 부과되는 것은 과중한 처벌로 판단된다. 즉, 해당 과실은 제3국에서 발생되었으며, 한국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의 지사)의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의사항

제3국에서의 업무과실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는 법인 (외국 법인의 지사) 및 이의 대표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적용되지 않기를 요청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관련 정부 부처: 법무부

부록

주요 약어

줄임말	국문
AEBS	비상자동제동장치
AI	인공지능
ARECs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ATP	실거래가
BREEAM	영국 친환경건축물인증
BSE	광우병
CAGR	연평균 성장률
CBI	영업비밀
CCA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
CGT	환산 톤수
CMR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CODEX	식품규격
CPI	신용생명보험
CSV	공유가치 창출
DUI	음주운전
EcoAs	환경성보장제
EDI	전자문서교환방식
EMC	전자파인증
EU	유럽 연합
EV	전기자동차
FDC	복합제
FRAND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합리적인
FSC	시설보안확인
FTA	자유무역협정
FTZ	자유무역지역
G-SEED	녹색건축물인증제도
GDP	국내총생산
GHG	온실가스
GHS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 표시 국제조화 시스템
GLP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MO	유전자변형식품
GMP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HACCA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DV	중대형차

기관	줄임말	국문
	ADD	국방과학연구소
	DAPA	방위사업청
	DREC	약제급여평가위원회
	DTaQ	국방기술품질원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	유럽의약청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MO	국제해사기구
	KATS	국가기술표준원
	KCS	관세청
	KEA	한국에너지공단
	KECO	한국환경공단
	KEPCO	한국전력공사
	KFTC	공정거래위원회
	KIDI	보험개발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PO	특허청
	KPT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KSA	선주협회
	MAFRA	농림축산식품부
	MCST	문화체육관광부
	ME	환경부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ND	국방부
	MOEF	기획재정부
	MOEL	고용노동부
	MOF	해양수산부
	MOGEF	여성가족부
	MOHW	보건복지부
	MOJ	법무부

기관	줄임말	국문
	MOLIT	국토교통부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S	중소벤처기업부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NTS	국세청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RRA	국립전파연구원
	UNECE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US FDA	미국 식품의약국
	WTO	세계무역기구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입니다. ECCK는 유럽 및 한국기업과 기관들의 상호이익을 위한 공정하고 열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비영리, 비정치적 기관입니다.

- ECCK는 한국 정부 및 주요기관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정부부처, 경제단체 및 언론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계 기업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유럽 각 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ECCK는 산업별 위원회 및 포럼을 통해 시장상황, 규제 및 산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럽계 기업들의 정보 교류의 중심으로서 ECCK는 백서, 비즈니스환경조사, 리포트 및 잡지와 뉴스레터 등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여 배포합니다.
- 회원사들은 ECCK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ECCK는 한국을 찾는 유럽 정부인사나 기업인들을 위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ECCK 웹사이트 www.ecck.eu 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ecck@ecck.eu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